

**‘기본이 바로 선 국가’ 를 위한
「비정상의 정상화」 추진과제**

2013. 12. 10

**국 무 조 정 실
관계부처 합동**

순서

I. 과제 현황	1
1. 10대 분야 핵심과제	3
2. 단기 개선과제	5
II. 세부추진계획	7

[참고] 부문별 정상화 과제현황

I. 과 제 현 황

1. 10대 분야 핵심과제 (48개)
2. 단기 개선과제 (32개)

1.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

1-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	13
1-2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	14
1-3 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	15
1-4 진료비 거짓·부당청구 관행 개선	17
1-5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	18
1-6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	19
1-7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근절	20

2. 공공부문 방만운영·예산낭비 근절

2-1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	23
2-2 지자체 출연기관의 부실경영 예방	24
2-3 연말 밀어내기 예산집행 관행 개선	25
2-4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	26

3.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근절

3-1 원전비리 근절	29
3-2 KTX 등 철도산업 비리 근절	31
3-3 공항 건설 및 운영 비리 근절	33
3-4 방위사업 분야 비리 근절	34
3-5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	37

4. 공공부문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

4-1 공공기관 직원가족 특혜채용 근절	41
4-2 지방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근절	42
4-3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	43
4-4 교육부 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개선	45

5. 세금·임금 등의 상습 체납·체불 근절

5-1 세금 고액·장기 체납 근절	49
5-2 4대 보험료 고액·장기 체납 근절	51
5-3 미납추징금 환수	52
5-4 고소득 전문직·자영업자 탈루 근절	53
5-5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 개선	55

6.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

6-1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	59
6-2 아파트 관리비 등 부동산 관행 개선	61
6-3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 행위 근절	63
6-4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근절	64
6-5 술 유통·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	65
6-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근절	67

7. 각종 사기·불법 명의도용 근절

7-1 보험 사기·범죄 근절	71
7-2 보이스포싱, 과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	72
7-3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방지	73
7-4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·범죄 방지	75
7-5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	76

8.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

8-1 장례식장·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	81
8-2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	83
8-3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	84
8-4 은행 꺾기 관행 개선	85
8-5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	86

9. 기업활동·민간단체 불공정관행 개선

9-1 본사-대리점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	89
9-2 온라인 포털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	90
9-3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행태 시정	91
9-4 기부금·성금 관리의 불투명성 개선	92
9-5 직능단체 훈·포장 대가수령 관행 개선	94
9-6 연예기획 분야 잘못된 관행 개선	95
9-7 체육단체의 불공정, 불투명성 개선	96

10. 정치·사법·노사 분야 비생산적 관행 개선 (추후 확정)

1.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성 또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

1-1 공공SW사업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	103
1-2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 철폐	104
1-3 공공택지개발시설 인수 지연 관행 개선	105
1-4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등 관행 개선	106
1-5 재외공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요구 관행 개선	107
1-6 공공기관의 학자금 무상·초과지원 관행 개선	110
1-7 비리 공무원 당연퇴직제도 개선	111
1-8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	112
1-9 검사 비위로 인한 불법수익 박탈	113
1-10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	114
1-11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관행 개선	115

2.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절차

2-1 휴대전화 위치정보조회 제한 완화	119
2-2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기준 조정	120
2-3 예술·체육요원 병역편입기준 개선	121
2-4 장애인의 장애인신체검사 면제 기준 조정	122
2-5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	123
2-6 법인세 신고 및 비축물자 인수서류의 전자신고 허용	124
2-7 KS와 기술기준 간 중복인증 일원화	125
2-8 과세정보 공유 제한 제도 개선	126

3. 국민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와 관행

3-1 어린이집·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	131
3-2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관행 개선	133
3-3 집회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	134
3-4 영·유아시설 주변지역 집회시위 제한	135
3-5 보금자리론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관행 개선	136
3-6 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관행 개선	137
3-7 공공입찰 참가 사업자의 설계비용 보상기준 개선	138
3-8 공정위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 개선	139
3-9 담합과징금 관련 불합리한 경감 관행 개선	140
3-10 청소년 대상 건보료 체납 독촉절차 개선	141
3-11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원 절차 개선	142
3-12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	143
3-13 보호외국인 장기구금 관행 개선	144

Ⅱ. 세부 추진 계획

10대 분야 핵심과제

①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

1-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

1-2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

1-3 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

1-4 진료비 거짓·부당청구 관행 개선

1-5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

1-6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

1-7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근절

1-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

① 선정사유

- 보육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다니지 않는 아동 및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후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어린이집 위법행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
 -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관리시스템 부재, 관련 정보공개 등 투명성 부족 등이 관행적 부정수급 지속 요인으로 작용
- * (부정수급 건수) '10) 924 → '11) 1,230건 → '12) 1,715건
(환수액) '10) 7,115백만원 → '11) 5,874백만원 → '12) 5,202백만원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제재 및 정보공개 강화
- ① 보조금 부정수급, 아동학대 등 범위반 어린이집 명단(대표자, 위반 내용, 처분사항 등) 공표 ('13.12.5~)
- ② 어린이집 예·결산 등에 대한 회계 정보공개 의무화('13.12.5~)
- 어린이집 예·결산, 수입·지출 등 회계관리 효율화 및 지도 점검·처분·사후관리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표준회계관리시스템 구축('14.1월~)
- 「복지부-지자체 합동기획」 지도·점검 확대 실시(1,100개소→1,500개소)

③ 향후 조치계획

- 지도·감독 공무원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점검, 처분, 사후관리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('14.1월~)
- 타부처(기관)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범위반 시설을 사전 모니터링함으로써 효율적 점검 실시(해외출국아동·교직원 부정수급 등, 연 2회 이상)
- 어린이집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점검단 구성 운영('14.1월 예정)
- * (점검단 기능) △ 지도·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△ 교육 및 매뉴얼 개발 △ 처분관련 질의사항 회신 △ 지자체 처분관련 소송사례 검토 및 자문 △ 점검결과 처분 등 조치사항 결정, 시군구 통보 △ 지도점검 결과 분석·평가 △ 이용불편신고센터 민원 처리

부처 보건복지부	담당부서(과) 보육기반과	사무실 02-2023-8950,8949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1-2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

① 선정사유
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부당·불법 수급 사례 등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 초래
 - * '10~'12년중 부정수급은 총 15,200건으로 총 수급자 대비 0.6% 수준이나 부정수급액은 총 18,610백만원으로 연 평균 62억 원에 이름
- 2014.10월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대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신뢰있는 제도 추진 필요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부적정 수급자격 일괄 정비 및 환수
 - ① 사망자, 장애인 등 수급자격 일제 확인조사 및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시행('13.10월~)
 - ② 관계기관(국토부·법무부·국세청 등) 수급자격 요건 관련자료 연계강화
 - 임차·임대소득(전월세정보 등),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단절 확인(출입국·건보·연말정산 내역) 등('14년)
 - *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
 - ③ 자격요건 확인업무 오류 최소화
 - '변동알림' 기능* 강화, 수급자격 중지시 관련 급여·서비스 '자동중지 기능' ('14년)
 - * 사망자·소득·재산 정보 등이 변동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자동 인지하도록 하는 알림서비스 기능('14년 상반기 서비스 개시)
- 복지수급자 소득·재산조사 강화
 - ① '13.10월부터 9개 지자체에 부양의무자 금융재산조사를 시험 적용('13.10월~)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'14년 전수조사 실시
 - ② 개인 소득인정액 산정시 2,000만원 이하 이자소득도 소득에 반영

③ 향후 조치계획

- 정보공동 활용, 복지수급자 자격관리 강화 시스템 개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개정추진('14년 상반기)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보건복지부	기초생활보장과	2023-8123
보건복지부	복지정보과	2023-8365

1-3 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

① 선정사유

- 허위서류 발급, 명의 도용 등을 통한 **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** (고용보험기금, 임금채권보장기금, 사회적기업지원금 등) 사례 지속 발생
 - * '12년 고용보험기금은 135억(2.2만명), 임금채권보장기금은 6.4억원(108건), 사회적기업 지원금은 13억원(27건) 적발

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

- A씨는 유령 회사 설립 후, 신용불량자 12명을 모집하여 허위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→ 이직사유를 '비자발적 사유'로 담합하여 실업급여 편취
-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출산을 앞둔 직원을 채용하여 바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, 친인척, 지인 등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하여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부정수급
- C씨는 원격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면서 훈련생들이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수료가 가능하도록 학습관리시스템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
 - ① 부정수급 유발소지가 있는 각종 지원금 제도 요건 등 정비
 - *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방식 개선(직접지원 → 응자지원)
 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지도감독 강화
 - *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요건 강화(재취업후 6개월 후 → 12개월)
 - ②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강화(1배 → 최대 5배), (3회이상) 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급자격 일정기간 제한(최대 5년) 등
 - ③ 국세청·건보공단 등 관계기관 지원대상자 정보 상호 연계·공유, 개인별 위험등급 설정·관리, 악성(반복) 부정수급자·사업장 DB 구축
 - ④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훈련기관 모니터링 및 정기·수시 점검 강화
 - * 모니터링 결과 부정훈련이 의심 훈련기관에 대하여 수시 점검 실시
 - * 원격훈련기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증원(4명<'13년>→8명<'14년>)

-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부정수급 未遂者 처벌근거 마련
 - 체불사건 확인시에도 현행 근로자의 진술 외에 계좌확인, 4대 보험 신고내역 등을 확인근거 자료로 추가
- 현행 자율 경영공시를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의무화
 -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반납 시 재정지원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

③ 향후 조치계획

<법령 개정>

- 고용보험법령 개정('14년)
-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('14년 상반기)
 - * 훈련생의 실제 수강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의 훈련실시 신고시 훈련생 연락처 등록 의무화
- 임금채권보장법 개정('14년 상반기)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('13년 완료)
-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('14년 하반기)

<지도·감독 강화>

-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시, 지도점검 강화(수시)
 - * 노사 담합, 브로커 개입 등 공모형의 조직적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기획조사 강화
 - *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의심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및 검·경 합동조사 강화
 - *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금 지급시, 실제 근무여부 확인 강화
- HRD-Net(직업능력개발시스템)을 활용, 고용보험 자격취득 등 이력 변동 상황을 주기적(훈련실시시, 비용지급시 등)으로 확인·조사(수시)
- (예비)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침개정('13. 12월말)
 - * 신규참여 사업장 집중 점검(상반기), 관리대상 사업장 집중 점검(하반기)
 - ** 부정수급자 단계별 조치기준 및 사업 참여제한 강화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고용노동부	고용보험기획과	02-2110-7203,8214
고용노동부	직업능력평가과	02-2110-7284,7265
고용노동부	고용지원실업급여과	02-2110-7130,7245
고용노동부	근로복지과	02-2110-7415,7377
고용노동부	사회적기업과	02-2110-7173,8473

1-4 진료비 거짓·부당청구 관행 개선

① 선정사유

- '12년 405개 의료기관 169억원의 거짓·부당청구 적발(526개 기관 현지조사 결과)
 - 관행적으로 병·의원 등이 진료를 거짓·과다 청구하는 등 부당 청구로 인하여 환자의 금전손실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
-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에서 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처벌 등을 가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
 - *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①전액 부당금액 환수, ②행정처분(업무정지 등), ③형사고발, ④위반사실 공표(요건해당) 등을 시행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거짓·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
 - ① 복지부, 심사평가원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 현장조사 거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연장(현행 1년 → 개선 2년)
 - ② 거짓·부당청구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병원이 장기간 과징금 미납시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전환
- 집중심사 대상 진료항목 확대 등 심사 강화
 - 부당청구 우려 진료항목,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·심사하여, 적정청구 유도(대상 진료항목: '12년 14 → '13년 16, 재정 절감액: '12년 700억원 → '13년 800억원 예상)
 - * 사전예고 후 집중 심사를 통해 개선 여부 점검 및 피드백을 시행
-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 진료받은 서비스 내용 제공
 - 젊은층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진료 내용 확인 참여 유도

③ 향후 조치계획

- 국민건강보험법(제98조, 제99조제2항) 개정 추진('14년 상반기)
- 집중심사 대상항목 선정, 집중심사 실시('14년 1분기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보건복지부	보험평가과	2023-7440
		2023-7442
		2023-7439
		2023-7438

1-5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

① 선정사유

- 지자체가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엄격하지 못한 선정·심의 절차, 부당지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 차단 장치 미흡, 부적절한 집행시 제재 미흡 등으로,
 -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과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허위 청구, 보조금 횡령 등 부조리 사례가 빈발

※ 대검, 12.1~13.6 집중 수사를 통해 총 70여개 단체가 약 63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사실 적발 총 93명 구속('13.7.24)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지자체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성과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선정·지원하고, 부당한 지원과 집행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 하도록 법률 개정
 - ①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집행과정에서의 법령위반 등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및 벌칙규정(벌금, 보조금 교부 제한 등) 도입
 - ②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객관성·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「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」의 민간위원 비율 확대*, 위원장 호선
 - * (현행) 2/3이상 → (개선) 3/4이상
 - ③ 보조사업 3년 일몰제 및 성과평가 실시 후 지원토록 법제화 추진
 -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인터넷 공고 등 성과에 따른 투명한 선정절차 강화
 - * 매년 「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(안행부 훈령)을 통해 지자체에 시달

③ 향후 조치계획

- 지방재정법 개정
- 각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개정('14년 중)

부처 안전행정부	담당부서(과) 재정정책과	사무실 02-2100-4102,4116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1-6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

① 선정사유

- 농업 정책자금의 체계적인 집행관리 미흡,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반복적으로 발생
 - 보조금이 특정 농업인 또는 법인에게 편중 지원된다는 형평성 논란도 지속 제기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① (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정 추진) 각 사업별로 분야별 전문 담당과를 지정하여 예산편성 시부터 집행·사후관리까지 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
 -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,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
- ② (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 DB 구축)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로 낭비·중복 요인 제거
 - 통합관리 DB 구축 및 쌀·밭·조건불리 직불 시범사업 추진
 - *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 및 DB 구축 추진 중('13.7~12)
- ③ (보조사업 취득 시설물 채권보전 방안 마련)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담보권 행사 제한 등 사후관리 강화
 - * 농업보조사업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('13.7~12)

③ 향후 조치계획

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정('13.12월)
 -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
 -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채권보전 방안 마련
 - * 부기등기(附記登記) 도입, 담보제공 승인 기준 마련 등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농식품부	재정평가담당관실	044-201-1381,1389

1-7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근절

① 선정사유

○ 카드제 도입 등 제도개선에도 일부 농업인들이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 지속

- 폐농 또는 농기계 고장시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 수급
- 농업용 외의 다른 용도로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

※ 최근 3년간 면세유 부정사용 적발 실적(건, 물량, 금액) :

(‘11) 215건/2,538kl/2,530백만원 → (‘12) 339/1,504/1,558 → (‘13.9월) 534/5,270/5,173

· ‘11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후관리·감독 후 적발사례 증가(‘10년까지 농협)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① 폐농기계의 재신고 등으로 인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기계 보유 현황 신고 강화(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)

* (현행) 모든 농기계 2년 → (개선) 주요 농기계(트랙터, 콤바인 등) 1년, 그 외 농기계 2년

② 농업인의 농기계 신고 시 현장실사 강화(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)

* (현행) 현장실사 미흡 → (개선) 실사결과 농협중앙회에 의무 보고 및 농기계 보유현황 이통장 확인 및 사진첨부

* 우선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등 사용이 많은 농기계 중심으로 추진

③ 향후 조치계획

○ 기재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법령* 개정 추진(‘13.11월~)

*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부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

○ 현장실사 강화 등을 위한 「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」 개정 추진(‘13.12월)

부처 농식품부	담당부서(과) 식량산업과	사무실 044-201-1831,1840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② 공공부문 방만운영 · 예산낭비 근절

2-1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

2-2 지자체 출연기관의 부실경영 예방

2-3 연말 밀어내기 예산집행 관행 개선

2-4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

2-1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

① 선정사유

-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행태를 바로잡는 강도 높은 개혁은 시대적 당면 과제
 - 대통령 시정연설(11.18)에서도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와 방만경영 근절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근절
 -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체계 조정
 - 시정이 필요한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하여 개선사항을 '가이드라인'으로 제시
 - 복리후생 사례를 면밀히 점검, 경영평가 등을 통해 시정
 - 고용세습, 경영·인사권 침해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
 - 경영평가지 '불합리한 관행 해소' 평가비중을 상향조정
 - 개선노력이 부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가조치 검토
 - 방만경영 개선노력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사례 홍보
 - 종합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
 -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방만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
- 12월초 '공공기관 정상화대책' 수립·발표

③ 향후 조치계획

- 구분회계제도를 '14년 상반기중 도입해, 단계적으로 확대
- 공공기관 모니터링 체계 구축 (14년 1분기)

* 공운위 산하에 (가칭)'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' 구축(기재부 2차관 주재)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기획재정부	경영혁신과	044-215-5610,5615
기획재정부	정책총괄과	044-215-5511

2-2 지자체 출연기관의 부실경영 예방

1 선정사유

- 지자체가 설립·지원하는 출자·출연기관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,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부실경영 및 예산남용 등 문제점 빈발

* 현황: '98년 117 → '02년 186 → '06년 279 → '10년 409 → '13.5월 463개

* 최근 5년간 신설 현황(총 164개): '08년 53 → '09년 37 → '10년 14 → '11년 32 → '12년 23 → '13

※ (사례)경북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시 원장의 업무추진비 유용, 불법 수의계약, 공금 횡령 등 다수의 문제 발생

- 지난 '13. 2월부터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지침」을 시행하고 있으나, '지침'이라는 성격상 구속력 부족 등 한계 존재

※ 지자체들 출자·출연기관 경영등급 B이상 거의 없어... 경영평가조차 안받아 (문화, '13.10.7)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운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제정

- ① 지자체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출자·출연기관을 설립하되, 설립 前 안행부장관과 협의 의무화
- ② 임직원의 채용, 보수, 조직, 예산·회계·결산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
- ③ 지자체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, 안행부장관은 그 결과를 통합하여 공시

3 향후 조치계획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('14년 중)
- 각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 관리 조례 등 제정('14년 중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안전행정부	재정관리과	02-2100-4320,4015

2-3 연말 밀어내기 예산집행 관행 개선

1 선정사유

- ‘연말 밀어내기식 예산집행’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우려가 높으므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근원적인 방지방안 마련 필요

* (사례)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입, 남은 업무추진비를 소진하기 위해 실국별로 할당,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굴착 등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제도적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
 - ① 절약재원은 예산편성시 인센티브 재원으로 반영
 - 연말 예산절약이 차년도 예산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화
 - ② 기본경비(기관 유지·운영비)의 이월한도 확대
 - 다음연도 이월한도를 당해 경비 예산의 10 → 15% 수준으로 확대 (책임운영기관의 한도는 현재 20%)
- 연중 적정수준의 예산집행 유도
 - ① 경제전망, 재정여건, 집행가능한 수준 등을 반영한 월별 재정집행 관리계획 수립
 - ② 연말 과다집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

3 향후 조치계획

- 국가재정법 시행령 (기본경비 이월한도 확대, 제20조③) 개정 (‘13.12월)
- ‘15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인센티브 조항 반영 (‘14.4월)
- 하반기 재정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(‘14.6월)
- 재정관리점검회의(매월 1회)를 통한 집행점검·관리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기획재정부	예산총괄과	044-215-7110,7115
기획재정부	재정집행관리팀	044-215-5331

2-4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

1 선정사유

- 건강보험 무자격자(불법체류 외국인, 이민출국자 등),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자도 건강보험 급여 제공 후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사후적으로 환수
 - 이에 따라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및 재정 누수*가 발생하고 있으며, 사후 환수에 따른 행정 비효율**도 높은 상황
- * 재외국민이 진료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, 국내거주 친인척 등의 보험증을 무단 이용하여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 등
- ** '12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13만명 113억원 부당수급사례를 적발하였으나, 환수한 금액은 41억 원에 불과

2 정상화 추진방안

①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급 중단

-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시 심평원이 심사 전에 자격을 확인(1차)하고, 건보공단에서 급여비용 지급 전에 자격여부 재확인(2차) 추진
-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확인 강화

② 급여제한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급을 사전제한

- 급여제한 여부를 요양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보완
 - * 건보료 체납 : 156만 세대, 2조 6천억원
- 다만,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 요양기관 이용의 어려움 완화

3 향후 조치계획

-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('14년 상반기)
 - * “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할 의무” 신설
- 전산 시스템 보완 등 추진('14년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보건복지부	보험정책과	02-2023-7410,7394

③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근절

3-1 원전비리 근절

3-2 KTX 등 철도산업 비리 근절

3-3 공항 건설 및 운영 비리 근절

3-4 방위사업 분야 비리 근절

3-5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

3-1 원전비리 근절

① 선정사유

- 그간의 원전 관련 비리 등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국가 전력수급에도 부정적 영향 초래
 - 또한, 원전 산업계는 지난 30여 년간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순혈주의가 고착화되면서 견제와 감시가 미흡한 상황
- 이에 따라, 원전의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하고,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비리의 재발을 철저히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,
 - 원전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·감독 체계도 원전 건설·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<既 추진사항>

- 원전비리 재발방지 종합개선대책(6.7)에 따라 책임규명 및 관련자 처벌, 쏠 원전에 대한 안전조사, 제도개선 필요사항 조치('13.10월 완료)

① 책임규명 및 관련자 처벌

- 품질서류 위조, 납품비리, 인사청탁 비리 등을 적발해서 100명 기소
- 관리·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면직하고, 한전기술 사장은 해임조치
-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·현직 직원 21명에 대한 징계조치

② 쏠 원전에 대한 안전조사

- 가동 중인 원전 20기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처리된 21,681건의 품질서류에 대하여 100% 전수조사를 완료
-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가동을 중지한 원전 3기에 대하여는 총 268,302건의 품질서류 중 86%에 해당하는 231,685건의 서류를 조사·검증

③ 비리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

- (유착관계 근절) 원전업계↔협력사간 비리 근절을 위해 원전 퇴직자 재취업을 금지(3년간)하고, 한수원 외부 전문가 영입 확대
- (구매제도 개선) 원전산업 전반에 걸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, 적격심사제 도입, 조달계획 사전공개 등 구매통제 강화
- (품질관리 강화) 원전업계↔시험기관간 비리 유형인 품질서류 위조 방지를 위해 제3기관 검증제도 등 품질감시 확대

* (제3기관) Lloyd(英) 선정('13.10월), (검증내용) 시험성적서 서류위조 확인, 입회 실시

③ 향후 조치계획

① 쉼 원전에 대한 안전조사

- 가동 중지 원전 3기는 연말까지 부품교체, 안전성 평가 등 조치 완료 목표
- 건설 5기는 운영 허가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, 부품교체 등 완료

② 원전 공기업의 안전·비리예방 경영활동의 제도화, 이행감독 체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원전사업자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」 제정

* '13.12월중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입법 추진

③ 비리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행을 독려하고, 원전 공기업이 안전·투명성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문화 개선

④ '원전산업 정책협의회'를 통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, 원전 비리 척결·안전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·보완 실시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산업통상지원부	원전산업정책과	02-2110-5481,5487
원자력안전위	원자력안전과	02-397-7282

3-2 KTX 등 철도산업 비리 근절

① 선정사유

- 최근 KTX 부품 시험성적서 위·변조* 등 국가기반 주요기반 사업에 대한 잇따른 부품납부 비리 발생
 - * 원전에 이어 KTX도 부정 부품 납품비리 적발 ('13.10.16, KBS)
KTX 부품도 납품비리 '얼룩' ('13.10.15, 세계)
- 국가기반사업 주요부품에 대한 비리는 국민안전은 물론 국가신뢰도와 직결되므로 각종 공공시설의 납품비리 대책 긴요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① (업체와의 유착차단) 철도시설공단 및 철도 운영기관(철도공사 등 14개)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제한규정을 위반한 고용업체 적발시 입찰제한
 - 철도시설공단 및 철도 운영기관(철도공사 등 14개) 퇴직자의 설계·용역 참여 등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설계·감리 선정 평가기준 감점항목 신설 등 제도 강화
- ② (구매·입찰 절차개선) 구매기술규격서 사전 공개, 발주사업 평가위원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는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
 -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철도용품은 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제 시행
 - 철도용품 구매제도 개선위원회 구성·운영
 - 제조국 허위기재 차단을 위해 해외부품의 원제작사와 직거래 확대 및 판매정보 확인, 제작사에 인력을 파견하여 현지 중간점검 시행
- ③ (검증시스템강화) 시험성적서 재검증 시스템 도입 및 품질검증 절차 강화
 -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철도시설공단 및 철도 운영기관(철도공사 등 14개)이 직접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재검증하는 제도 시행
 - 시료채취 시 검사자가 직접 입회하여 시험의뢰 등 품질검증 강화
 - 철도안전감독관(국토부)이 정기적으로 철도부품 및 안전을 확인점검

- ④ (비리업체 관리·징벌 강화) 비리를 저지른 납품·시공업체, 시험성적업체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
- 위·변조 시험성적서 제출 등 비리업체는 영구 입찰제한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
 -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물품납품의 경우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업무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허위시험성적서 작성 시 처벌 강화 (관련 법규 개정)

③ 향후 조치계획

- 철도시설공단 및 철도 운영기관(철도공사 등 14개) 규정 제·개정 등 제도 마련 및 시행(~'14.06)
- 세부 추진일정

순번	세부 추진내용	추진일정
1	퇴직자 재취업 제한규정 위반업체 적발시 입찰제한 규정 마련	~'14.06
2	퇴직자 참여시 설계·감리 선정 평가기준에 감점항목 마련	~'14.06
3	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제 시행규정 마련	~'14.06
4	구매기술규격서 사전 공개하는 규정 마련	~'14.06
5	발주사업 평가위원을 외부인사 위촉 규정 마련	~'14.06
6	구매제도 개선위원회 구성·운영 규정 마련	~'14.06
7	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마련 및 년 1회 정기검사 시행 규정 마련	~'14.06
8	시료채취 시 검사자가 직접 입회하여 공인시험 의뢰 규정 마련	~'14.06
9	해외부품의 원제작사 직거래 확대 시행	~'14.06
10	해외부품 제작사에 대한 현지 중간점검 시행 규정 마련	~'14.06
11	위·변조 시험성적서 제출업체는 영구 입찰제한 규정 마련	~'14.06
12	시험성적기관 관련 법규 개정	~'14.12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국토교통부	철도기술안전과	044-201-4600,4601,4608

3-3 공항 건설 및 운영 비리 근절

1 선정사유

- 인천·김포공항 입찰 비리,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공항건설·운영에 있어 비정상적 관행 논란

* 인천공항공사 3단계공사 특정업체 내정 의혹('13년 국정감사 이윤석 의원)
 ☞ 1, 2단계 사업과 달리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심사 등

** 경찰청 김포국제공항 입찰비리(뇌물수수 혐의) 수사('13.6.17. 뉴스1)

- 전기통신, 기계 등이 집약된 공항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투명한 물품구매 및 품질확보가 선행될 필요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(관리감독 강화) 사업시행자(공항공사 등)의 공항건설 실시계획 승인시 입찰·납품 관련계획 심의 강화 (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령)(계약담당 부서 검토절차 의무화)

- (입찰관리 강화)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찰관련 절차와 정보의 사전 공개
 - 이해관계자 접촉시 청렴후견인 및 접견자 방명록 작성 의무화
 - 평가위원 사전 공개 및 접촉시 불이익 처분 강화

- (자재납품관리 철저) 설계, 발주/계약/검사·검수기능 분리→역할 및 하자책임체계 강화를 통한 품질확보 및 비리발생요소 근절
 - 사업규모에 따라 물품검수 시 품질검사 시행 강제
 - 시험성적서 등 품질증빙서류 검증절차 개선(시험/검사기관에서 직접 제출)

변경 전	변경 후
(설계/발주) 사업부서	(설계/발주) 사업부서
(계약절차) 계약팀	(계약절차) 계약부서(기능 강화)
(검사/검수) 사업부서	(검사/검수) 품질검사자 Pool, “신설”

* 사업규모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가 Pool 구성 및 운영(계약부서에서 직접 선정)

3 향후 조치계획

- 공항운영 종합대책 마련·시행('13.12월)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국토교통부	공항정책과	044-201-4328,4337

3-4 방위사업 분야 비리 근절

① 선정사유

- 최근 방산업체의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·변조 적발 및 원가부정 사례 발생
- 이를 계기로 품질불량 등을 포함한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척결을 위한 본질적인 개선 필요
 - * 국방기술품질원 조사결과 34개업체 125건 위·변조 사실 적발
 - 수리온, K9 자주포, 보병전투차, 구난전차 등에 위·변조된 부품 사용
 - * 대통령 시정연설시 방산비리 등 근절 약속('13.11.19)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※ 비리 발생위험이 높은 품질관리, 원가산정, 계약분야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
- **(품질관리 체계 고도화)** 군수품 시험평가관리 부실, 품질불량 해소
 - ① 시험성적서 위·변조 원천 차단 및 재발방지 대책 추진
 - 공인인증시험기관에 대한 시험의뢰·결과를 기품원이 직접 관리
 - * 기품원-공인시험기관과 MOU 체결 추진
 - 하자 발생이력 등 품질취약품목에 대한 중복 검증시스템 구축
 - ② 국산화 개발품에 대한 선제적·예방적 품질관리체계 구축
 - * 개발 ~ 양산단계까지 품질 체크리스트, 매뉴얼 제정, 품질관리책임관 임명 등
- **(공정원가 인프라 구축)** 허위자료 제출 및 담합을 통한 원가부정 근절
 - ① 민간 아웃소싱 및 원가정보시스템 확대 등 원가관리체계 혁신
 - 원가산정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(회계법인 등) 위탁, 산정결과 검증 강화
 - ② 원가관리 투명성 제고 및 엄정한 관리통제기반 구축
 - 업체 자료관리 의무 부과, 정부 조사권 확보, 위법 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원가공정화법 제정 추진(국회 제출('13.6월))
 - 비리 발생업체의 사업참여 제한, 업체 선정 시 계약이행능력 현장실사 강화
 - * 독점공급업체가 제재(입찰참가금지)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불가피할 경우 별도의 과징금(계약금의 최대 30%) 추가 부과

- (계약 및 업체선정의 투명성 강화) 업체유착 차단 및 부적격업체 선정 방지
 - ① 수의계약 축소 및 경쟁기반 확대
 - 방산물자 지정 축소, 유지 필요시 복수 방산업체 지정을 통해 신규 진입 확대 및 경쟁 여건 조성
 - * 방산물자 복수업체 지정 지정목표 : 4%('13년) → 20%('17년)
 - 정보제공 빌미로 한 비리근절을 위해 사업소요,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
 - ② 평가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체선정평가제 강화
 - 일정 기준 사업제안서 평가 시 감사부서 참관제, 평가단(통상 7~8명) 규모 확대 등
- (상시 점검 및 예방체계 강화) 업무 담당자, 업체 대상 상시통제 및 예방 시스템 강화
 - ① 옴부즈만 활동·자체 감사 확대 등 상시 통제 강화
 - * 옴부즈만 :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라 3인의 외부인사로 구성하여 방위사업 수행과정상의 민원사항 조사, 시정 및 감사요구 활동 수행
 - ② 퇴직자 관리 강화, 청렴문화 확산 등 예방시스템 강화
 - 퇴직자의 군수업체 취업심사 강화 및 지속 관리
 - * 퇴직자 취업실태 일제조사(연 2회, 필요시 수시), 취업제한대상 : 중령이상, 5급 이상
 - 직무 관련자 범위 확대 등 직원행동 강령 개정
 - * 일반 부처 공직자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

③ 향후 조치계획

- 군수품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이행계획 수립 : '13.12월
- 품질관련 시험성적서 기품원 직접 확인(즉시) 및 공인인증시험기관 간 인증시스템 연동('14년 상반기 내)
- 원가업무 아웃소싱 및 검증 확대 : '14. 1월
- 업체 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제도 강화 : '14. 3월

-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('14. 9월)
- 부정당업체 처벌 강화(과징금 부과) 제도 개선 : '14. 6월
 - *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
- 방산비리 예방을 위한 상설 감사 및 품질관리 지속 추진
- 국방통합원가시스템 방산업체 연동 확대 : '14 ~ '17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방위사업청	정책조정담당관	02-2079-6210,6212

① 선정사유

- 송례문 부실 복원, 석굴암 본존불 균열 논란 등 전반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부실 문제 지속 발생
- 문화재 수리 자격증의 불법 대여가 관행으로 이루어지면서 문화재 보수·복원의 전반적인 부실 야기
 - * “송례문 부실복구를 포함해 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한 엄중 문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” (‘13.11.11, VIP)
 - ** “송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,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.” (‘13.11.18, VIP 시정연설)
 - *** 문체부 장관에게 ‘문화재 관리 특별점검과 제도개선’ 지시(‘13.11.21, 국무총리)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추진(국가지정문화재, 시·도지정문화재)
 -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및 시·도지정 문화재 관리실태 현황 전면 조사(지자체·문화재청 합동)
 - 문화재 보수정비 현장점검 확대·강화 실시(정기·수시점검 확대)
 -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별, 공사현장별 개선방안 도출·시행
- 핵심문화재 관리체계 개선
 - 중요 국가지정문화재의 국가 직접관리 및 현장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
 - 문화재 수리 전문성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
- 문화재 수리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 대책 마련
 -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종합대책 마련·시행
 - 자격증 불법대여의 원천적 방지를 위한 전면 제도개선
 - 자격증 불법대여 감시체계 대폭 강화
 - 문화재 수리 감리제도 활성화 및 현장점검 강화

③ 향후 조치계획

-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추진('13.12.1 ~ '14.2.28)
 - 지정문화재 중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건조물 문화재 및 시·도 지정문화재 전면 점검 (정기조사, 박물관 소관 문화재, 무형문화재 등 제외)
 - * 총 6,752건(국가지정문화재 총 3,500건 중 중요 건조물문화재 1,447건, 시도 지정문화재 총 7,793건 중 5,305건)
 - 석굴암·해인사 대장경판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핵심 문화재는 별도 중점 관리
- '승례문 보수 등 문화재 보수·정비 전반' 감사원 감사 실시 ('13.11.19~'14.1월말)
- 중요문화재 보존관리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('14~'15년), 문화재 수리 현장점검 강화('13년 3회 → '14년 4회)
-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감시체계 강화
 - 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현장조사 및 엄벌조치('13.11~12월)
 - 자격증 불법대여 상시점검 체계구축 및 홍보제도 강화('14년~, 매년)
 - 불법대여 신고센터(Cleaning Center) 설치·운영('14.1월)
 - 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기준강화, 경력관리 제도도입 등('14년)
 - * 「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문화재청	정책총괄과	042-481-4810,4817
문화재청	보존정책과	042-481-4830,4841
문화재청	유형문화재과	042-481-4910,4914
문화재청	천연기념물과	042-481-4980,4986
문화재청	수리기술과	042-481-4860,4870,4864

4 공공부문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

4-1 공공기관 직원가족 특혜채용 관행 근절

4-2 지방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근절

4-3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

4-4 교육부 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개선

4-1 공공기관 직원가족 특혜채용 근절

① 선정사유

- 일부 공공기관이 인원 충원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직원가족을 특혜 채용하는 ‘고용세습’ 관행을 유지
 -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, 부설기관, 지방공기업 중 노사협약에 의한 고용세습 운영기관은 65개, 인사내규에 따른 고용세습 운영기관은 11개로 조사 (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국감 지적 '13.10.11)
- 비정상적인 채용관행으로 청년들이 공평한 구직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공공기관의 ‘고용세습’ 관행을 근절하고 공개경쟁에 따른 인원충원 방식을 정착하여 청년들의 공평한 구직기회 확대
 - ① 직원가족 특혜채용을 허용하는 인사내규 관련조항 일제 폐지(‘13년)
 - ② 노사협약 체결시 직원가족 특혜채용제도 폐지에 관한 지침을 시달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지 불이익 부여
- 기관별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
 - 정기적(예: 1년 2회)으로 이행사항을 점검 (기재부, 주무부처, 지자체)

③ 향후 조치계획

- 공기업, 준정부기관, 주무부처·지자체에 특혜채용 관행 및 규정 폐지에 관한 지침 시달 (‘13.12월)
- 기관별 추진계획 접수 (‘14.3월)
- 추진상황 점검·공개 (‘14.5월)
-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개선 (‘14.6월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기획재정부	인재경영과	044-215-5570,5571
기획재정부	평가분석과	044-215-5552

4-2 지방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근절

1 선정사유

- 지방공사·공단이 내부규정,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직원가족을 우대 채용하는 사례가 있어, 인사운영의 공정성·객관성 저해 우려
 - * 현행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은 직원 신규채용 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채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을 위배하여 임직원 친인척 채용 사례 발생

※ '13.5월 조사결과, 137개 공사·공단 중 21개 공사·공단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, 퇴직 등을 한 경우, 배우자, 직계비속 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지방공기업이 직원 가족 등에 대한 우선채용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「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」에 구체적으로 명시
 - *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상 내부 친인척 우대채용 금지 규정 신설('13. 10월)
 - 지자체를 통해 기관별 내부규정에의 반영여부 조사 예정('14.6월)
- 지방공기업 인사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·감독 강화 독려
 - ※ 공사·공단은 지자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으로, 지방공기업법 제73조는 지자체 장이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규정

3 향후 조치계획

- 기관별 내부규정 반영여부 등 조사('14.6월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안전행정부	공기업과	02-2100-3901,3823

4-3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

① 선정사유

-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과 이에 따른 민-관간 유착 폐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'11.7월 「공직자윤리법」을 개정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개선, 강화(공정사회 추진과제)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유명무실, 소송·일감 몰아주기 등 전관예우 관행 상존 등 지적은 지속 제기

※ 「경찰→보험, 검찰→대기업 '취업커넥션」 (중앙, '13.10.8)

- 퇴직공직자들이 특정 업계로 재취업하여 연결망 구축시 정부-업계간 유착 야기 우려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 제도 유명무실 : 지난 5년간 재취업심사 받은 퇴직 공무원은 1,362명이며 그중 92.7%인 1,263명이 심사를 통과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①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강화

- 재산공개자 등 고위공직자는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
- 재산 비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취업을 제한

② 기관별 업무관련성 심사 강화

- 권한이 많은 기관*에 대해서는 취업 커넥션**이 의심되지 않도록 업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취업심사 강화

* 대통령비서실, 감사원, 공정위, 국방부, 대검찰청, 금융위, 경찰청 등

** 국방부 → 방산업체, 검찰 → 대기업, 금융위 → 금융기관, 경찰 → 보험·경비 등

③ 취업심사의 실효성 제고

- 취업심사를 회피하여 임의로 취업한 퇴직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

* 임의취업자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임의취업자 적발(연 2회) 및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는 '취업제한제도 알리미' 지속 시행

④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여부 조사 강화

- 취업한 퇴직자에 대해서는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 여부 조사를 강화하여 부정한 청탁·알선이 근절되도록 조치

※ 제도 현황 ('11.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요내용)

- ① **업무관련성 적용기간 확대** : 퇴직전 3년 → 퇴직전 5년간 (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 제한 법17조)
 - *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17조에 따라 취업 제한되는지 확인 요청에 대해 취업제한 여부 확인
 - * 다만, 특별한 사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국가 안보상 이유 등, 시행령 34조)
- ② **취업제한 대상업체 확대** : 영리사기업체·협회 → 영리사기업체·협회 + 일정 규모 이상 **법무법인, 회계법인, 세무법인**으로 확대 + **사외이사, 비상근 자문 또는 고문** 등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(법17조)
 - 장·차관 등은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법무법인 등 취업시 심사대상
 - 그 외의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 등은 심사 없이 법무법인 등에 취업 가능
 - *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 등에 대해 법무법인, 회계법인, 세무법인에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진선미 의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나 국회 사법개혁특위 등에서 반대 의견 표명 중
 - 재취업 전면 금지 시 변호사 등 자격증 제도의 본질,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
- ③ **퇴직자가 취업 후 재직 중 직접 처리업무 등 일정업무 취급금지 및 부당한 행위 못하도록 업무취급제한·행위제한제도 신설**
 - 재직 중 직접 처리업무 취급금지, 재산공개자는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금지 및 취업 후 업무내역서 제출(법18조의2·3 신설)
 -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및 알선 금지, 재직자의 신고의무 등(법18조의4 신설)
- ④ **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** : 1천만원 이하(법30조)
 - * 취업제한(17조), 업무취급제한(18조의2), 행위제한(18조의4) 등 위반시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
- ⑤ **국민의 눈높이에서 취업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(5인→7인, 전체 11인)**

※ 법 개정후 성과(안행부)

- '11.1~'13.9. 기간 총 813건 취업 심사를 하여 768건(94%)은 취업, 45건(6%)은 취업제한
- 금감원 취업심사 급감 : '10년 25건→'11년 4건→'12년 5건→'13.9월 2건
- 임의취업자 점차 감소 : '11년 134건→'12년 83건→'13.9월 29건
- 최근 3년('11.1~'13.9)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: 기간 중 취업제한비율 6%, 차관급 이상 13%('12년 18%, '13.9월 17%)

③ 향후 조치계획

-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한 취업심사 강화방안 마련·시행('14.6월)
- 각 부처 자율적 규율기준·취업윤리강령 등 제정('14년)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안전행정부	윤리담당관실	02-2100-4360,3352

4-4 교육부 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

① 선정사유

- 대학은 비영리기관으로 영리성이 없어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관계로,
 - 교육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대학의 총장 등으로 재취업하거나, 재직 중 대학으로 고용휴직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
- 이와 관련, 전관예우 및 정부와의 유착 등 엄정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존재

* '10.1~'13. 6월기간중, 교육부 공무원(4급이상) 37명이 대학 및 유관기관 재취업 (중앙일보 '13.10.11)

** 교육부 고용휴직 현황 : ('11.10/교과부) 32명 → ('12.10/교과부) 20명 → ('13.7/교육부) 6명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퇴직후 유착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재취업하지 않도록 자체윤리강령 개정
- 퇴직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·지도하는 등 자체 관리·감독 강화(서약서 징구 등)
-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의 고용휴직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화
 - * '교과부 공무원 고용휴직 중 고액연봉' 등 국감지적('11.9월) 이후 고용휴직 제한적 운영
- 교육부 출신 대학교수에 대한 연구용역 편중 제한(수주 실태 관리 및 건수 제한 등)

③ 향후 조치계획

- 교육부 자체 윤리강령 개정('13.12월)
 - 퇴직 후 2년내 업무유관 사립대 총장 재취업 금지 서약 및 관리, 현직 공무원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의 고용휴직 제한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교육부	운영지원과	02-2100-6110,6508

5 세금 · 임금 등의 상습 체납 · 체불 근절

5-1 세금 고액 · 장기 체납 근절

5-2 4대 보험료 고액 · 장기 체납 근절

5-3 미납추징금 환수

5-4 고소득 전문직 · 자영업자 탈루 근절

5-5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 개선

5-1 세금 고액·장기 체납 근절

① 선정사유

-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징수결정규모의 증가,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영향 등으로 체납발생이 늘어나 12년 체납발생액은 25.2조원, 연도말 미정리체납액은 5.9조원
 - * 체납발생총액(조원) : 20.7('09) → 22.2('10) → 23.3('11) → 25.2('12)
 - * 미정리체납액(조원) : 4.2('09) → 4.9('10) → 5.5('11) → 5.9('12)
 - * 현금정리액(조원) : 8.0('09) → 8.1('10) → 8.2('11) → 8.5('12)
-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·상습적인 체납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체납 세금의 철저한 징수를 추진하여 조세 공정성 확보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고의적·지능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중심 활동을 통한 추적조사 강화, 기관간 협업 확대,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징수관리 강화
 - ① 체납자 본인 외에도 추가적으로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제법 상 조회 범위 확대
 - * (현행 금융실명제법 제4조) “체납자의 재산조회” ⇒ (개선) “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”
 - ② 기관간 협업을 통해 체납처분 필수 정보 조기 확보
 - 자료공유가 제한된 법원으로부터 근거당권 설정·공탁금 자료를 수집·활용하고, 안행부와 국세·지방세 환급자료를 공유
 - ③ 체납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 신설

③ 향후 조치계획

- 금융거래정보 조회 범위 확대를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 ('14.12월)
- 법원, 안행부 등과 관련자료 공유 협의 추진 ('14.12월)
 - 전산연계를 통해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협의중
- 전담조직 운영 (숨긴재산추적과, '13.9월)
 - 6개 지방청 총 292명 규모 운영중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국세청	징세과	02-397-1601,1646,1652,1656,1692

5-2 4대 보험료 고액·장기 체납 근절

1 선정사유

- '13.7월 현재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.4조원에 달하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
 - * 체납액: 2.09조원('12.10월) → 2.17조원('13.1월) → 2.19조원('13.4월)
-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 체납액도 상당 수준
 - * 고용보험료 체납액: 3,990억원(1억이상 체납장 220건, 체납액 577억원)
 - * 산재보험료 체납액: 8,066억원(1억이상 체납장 604건, 체납액 1,870억원)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건강보험 (복지부)
 - ①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 제공
 - 2년 경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 고액·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
 - * '13.9.25, 979명 최초 공개
 - 1년 경과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고액·상습체납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(전국은행연합회)에 자료 제공,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여 (대출, 신용카드 발급, 이자율 등)
 - * 자료제공 대상자('13.10월 기준) : 지역 72천명, 직장 40천명
 - ②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진료토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
 - 6개월 이상 체납자는 건보적용배제(생계형 체납자는 제외)
- 고용·산재보험 (고용부)
 - ① 명단 공개 기준 확대 : 국민연금 명단공개 기준과 통일
 - 2년 경과 체납액 10억원 이상 → 납부능력*이 있음에도 2년 경과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
 - * 판단기준 : 재해 등으로 인한 재산손실, 사업의 중대한 위기(조업중단 1개월이상 등)에 처한 경우 등은 소명시 명단공개 제외
 - ② 보험료 체납사업장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 제한

3 향후 조치계획

- 건강보험 체납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 ('14년 1분기)(복지부)
-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('14년 상반기) (복지부)
 - * “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할 의무” 신설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('14년) (고용부)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보건복지부	보험정책과	02-2023-7410,7394
고용노동부	고용보험기획과	02-2110-7203,7231

5-3 미납추징금 환수

1 선정사유

- 현재 추징금 미납액은 총 25조 3,800억원에 이르고, 최근 5년간 4,747억원의 추징금을 환수하였으나 추징금 집행률은 1% 미만으로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
- 고액 추징금 미납자 중에는 전직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, 이들이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
- '13.7월 속칭 전두환추징법(「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」 개정안)으로 공무원 대상 추징금의 환수강화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민간인에 대한 환수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민간인에 대해서도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
 - ① 검찰의 재산 추적수단 강화
 - 과거에는 불가능했으나, 추징금 환수를 위한 영장 청구권,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,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권, 과세 정보 제공 요청권 등 신설
 - ② 제3자 명의 은닉재산 추징
 - 과거에는 제3자 명의의 은닉재산은 추징이 어려웠으나,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 추징이 가능하도록 개선
 - ③ 현재 추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도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도록 규정

3 향후 조치계획

- 「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형사소송법」 개정 추진

부 처 법무부	담당부서(과) 국제형사과	사무실 02-2100-3554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① 선정사유

-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현금결제 유도를 통한 신고누락 및 차명계좌 사용 등 지능적·변칙적 탈루행위 상존
 - * 12년 고소득 자영업자 598명 조사 3,709억원 부과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①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

-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(현행 10억원 이상)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
- 귀금속, 웨딩관련업,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
 - *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

② 고소득 전문직, 현금수입업소, 부동산임대업, 대부업, 학원 등 탈루 가능성이 큰 업종 중점관리

③ 기타 법적·제도적 기반 지속 추진

-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과태료 대폭 상향
- 탈세 제보 포상금 상향 등

③ 향후 조치계획

-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, '14.7월 시행)
-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추가(소득세법 시행령 개정, '13.10월 시행)
 -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확대(30만원→10만원 이상) 추진(소득세법 개정 예정)
- 고소득 전문직, 현금수입업종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사후 검증 및 세무조사 강화 (연중 실시)

- 거짓진술 및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(기존 500만원 → 2천만원)
(조세범 처벌법 개정, '13.12월)
-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 (국세기본법 개정, '13. 12월)
 - 최대 10억원 지급에서 최대 20억원 지급으로 확대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국세청	부가가치세과	02-397-1701,1706
국세청	소득세과	02-397-1731,1742
국세청	전자세원과	02-397-7581,7582,7592
국세청	조사2과	02-397-1131,1132

5-5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 개선

① 선정사유

- 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임금체불액이 증가추세로 반전되는 한편,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미준수가 지속 사회 문제화

< 임금체불 현황 >

구 분	'08	'09	'10	'11	'12
임금체불 근로자수(천명)	249	301	276	279	217
체불금액(억원)	9,560	13,438	11,630	10,874	11,772

< 최저임금 미만 현황 >

구 분	'06	'07	'08	'09	'10	'11	'12
최저임금 미만률(%)	9.4	11.9	10.8	12.8	11.5	10.8	9.6
최저임금미만 근로자수(천명)	1,442	1,891	1,747	2,104	1,958	1,899	1,699

- 건설업에서 신고된 체불임금은 '12년도 2,452억원(6만 8천명), '13.5월 까지 1,137억원(2만 8천명) 발생
 - '12년도 전체산업 중 건설업의 체불금액 비중은 20.8%로 취업자수(건설업/전체) 비중 7.2%(177만명)에 비해 약 3배 수준으로 매우 높음
 - * '12년도 전체산업 체불근로자수 284,755명 중 건설업 68,225명으로 24.0%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

-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시 지연이자제 도입 추진(연 10%정도)
 - * 현재는 퇴직근로자 임금체불에만 지연이자제(연 20%) 부과 중
- 체불사업장의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여 검토
 - * 고의·상습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(234명) 및 신용제재(401명)는 既 실시(9.5)
 - 3년 이내 임금 2회 이상 임금체불 &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
- 최저임금 미만시 즉시 시정지시 하도록 조치기준 강화*('14.1.1 시행)
 - * (현행) 시정지시(25일) 후 미이행시 사법처리 → (개선) 시정기간 없이 즉시 시정토록하고 미이행시 사법처리

②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

-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있어, 건설근로자에 대한 '임금지급 보증 제도'* 도입을 추진
 - * 금융기관 등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先지급, 사후에 건설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고, 보증기관은 보증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서 운영
- 기존 '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'의 용자 대상을 재직근로자 까지 확대 추진
 - * 현재 퇴직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용자
-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(편의점, 커피전문점 등)에 대해 근로감독 확대 ('12년 19백개소 → '13년 38백개소)

③ 향후 조치계획

- 최저임금 위반시 조치기준 강화 관련 「근로감독관 직무규정」 개정 ('14.1.1 시행 예정)
 -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 관련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국무회의 통과, 정부입법안 국회 제출('13.10월)
 -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제 도입, 체불사업장의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여 관련 「근로기준법」 개정 추진('14년)
 -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 요건 완화 관련 「임금채권보장법」 개정 추진('14년)
- ※ 「임금체불 예방·개선 종합대책(안)」 마련 ('14년 초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고용노동부	근로개선정책과	02-2110-7399,7392
고용노동부	인력수급정책과	02-6902-8161,8169

6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

6-1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

6-2 아파트 관리비 등 부동산 관행 개선

6-3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 행위 근절

6-4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근절

6-5 술 유통·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

6-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근절

6-1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

1 선정사유

- 교통질서 확립은 국민안전과 직접 관련된 최우선 과제의 하나
 - * '11년 인적재난 사망자 6,170명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5,229명(77.9%)
 - **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사망자수 기준으로 OECD평균(자동차 1만대당 1.2명)의 2배이며, OECD 32개국 중 30위('11년)
- 정지선 위반, 교차로 꼬리물기, 끼어들기 등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**교통혼잡** 및 **교통사고**로 인한 **사회적 비용 증가**
 - * 교통혼잡비용 28.5조원('10년),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 13조원('11년)
- “**안 걸리면 그만**”, “**지키면 나만 손해**”라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교통안전문화 형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
 - *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유 :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 (19.5%),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(15.7%) (교통안전공단, '13.3월)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① (제도·인프라 개선) **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신호체계 및 법규 정비(경찰청)**
 - 잘못된 교통신호체계로 인한 교통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**교통실정에 맞는 교통신호체계 개선방안 검토**
 - * 교통량에 맞지 않는 신호주기 운영, 도로형태와 맞지 않는 신호 운영 등
 - 과속, 중앙선 침범, 음주운전 등 **주요 위반행위** 관련 처벌의 실효성 확보방안 검토
 - * 주요 교통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·처벌기준 등 제재수준 강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
- ② (법과 원칙 적용) **교통안전문화 정착시까지 엄정단속(경찰청, 지자체)**
 - 사고원인 분석 및 주민여론 수렴 결과에 따른 단속테마 선정, 시기별·사고요인별 **맞춤형 집중단속** 전개
 - 구간단속장비 및 꼬리물기, 끼어들기 등 **무인단속장비** 설치·확대

- 인터넷 공익신고* 활성화 및 양체운전 캠퍼더 단속 강화

* 차량 블랙박스·휴대전화로 촬영한 교통법규위반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신고
(서울시에서 추진중인 「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」 전 지자체 확산)

③ (의식·문화 개선)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·홍보 강화

- 교육자료, 홍보동영상 제작·배포, 현장학습 활성화 등을 통한
각급 학교에서의 교통질서 교육 강화(교육부)

-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문화 개선운동 전개(안행부)

- '착한운전 마일리지제* 정착 등 범국민 운동 전개(경찰청)

* 스스로 교통법질서 준수를 서약하고, 실천한 사람에게 인센티브 부여

③ 향후 조치계획

○ 교통실정을 반영한 교통신호체계 및 교통법규 개선안 마련

* 교통신호불편 신고센터·긴급출동센터(도로교통공단) 운영 확대

○ 음주운전 제재강화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청회 개최

○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운영 등 교통질서 확립계획 적극 추진

○ 각급 학교별 교통질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통안전 현장체험
학습 활성화

* 각 연령대에서 빈발하는 사고유형별로 예방교육 실시 및 교통안전체험센터 확대

○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실천과제 발굴 및 캠페인 전개

* '14년 안문협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선정 및 캠페인 전개

○ '착한운전 마일리지제' 확산방안 마련

* MOU 체결기관(우리은행, SK플래닛 등)과 홍보·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방안 구체화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교육부	학생건강안전과	02-2100-6877,6547
안전행정부	안전개선과	02-2100-3657,3887
경찰청	교통안전과	02-3150-2052,0632

6-2 아파트 관리비 등 부동산 관행 개선

① 선정사유

-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관리사무소 및 주민대표의 뒷돈거래, 횡령 등 비리는 수십년간 지속된 고질적, 구조적 문제*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

* '11년 국토부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 관련 민원 : 12,044건

-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등 목적으로 실거래가가 아닌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이 계속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한 개선 필요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○ 아파트 관리비 관행 개선

- ①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매년 정기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
- ② 입찰담합 등 아파트 공사·용역 등 입찰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자입찰제 의무 시행
- ③ 관리비리가 주로 공사업체 등 계약과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는 점에 착안,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사·용역계약서 공개 의무화
- ④ 관리비 공개 확대, 주택관리업자 평가 등 인터넷 정보공개 확대

○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 근절

- ① 전속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계약의 전과정이 국토부가 관리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구축*

* 부동산거래시스템(RTMS) 등과 연계한 부동산 책임중개시스템 구축

- 책임중개시스템을 통해 투명한 거래, 물건안전성 확보, 다수 중개업자의 과당경쟁 예방, 세무등기시스템에 연계한 관리 가능

② 지속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(국토부, 지자체, 국세청 등)을 추진하고, 최근 문제가 된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단계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단속 추진

- (1단계, 이전 전) 이전 대상기관에 대한 홍보조치
 - * 실거래 신고 위반시 행정제제(과태료, 양도세 증가) 등 불이익 전파
- (2단계, 이전 시점) 이전 대상지역 중개업소 집중 단속
- (3단계, 이전 후) 실거래가 정밀검증

③ 향후 조치계획

< 아파트 관리비 관행 개선 >

- 주택법 개정안 추진('13년)
- 인터넷 정보공개 확대
 - 아파트 관리비등 공개 대상(27→47개) 확대('14.6월)
 - 입주민의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 및 공개('14.12월)

< 다운계약서 관행 개선 >

- '14년도 공공기관 이전계획 대비 단속계획 수립('14.1월) 및 단속 추진
- 부동산책임중개시스템 구축 추진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국토교통부	주택건설공급과	044-201-3364,3374,3372,3378
국토교통부	부동산산업과	044-201-3411,3413,3412

6-3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 행위 근절

1 선정사유

- 사행산업은 국민의 여가·레저 활동 촉진,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 활성화의 순기능이 있으나, 도박중독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합리적 규제·건전한 발전 유도 필요
 - ※ 경마, 경륜, 경정 수익금의 일부를 레저세 등으로 부과하여 지방재정 건전화 및 농축산업 발전에 활용
-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경주류 사행산업(경마, 경륜, 경정)의 경우 1회(1경주)당 10만원으로 구매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으나,
 - 이용자가 여러 창구를 돌아가며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, 구매상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구매가 가능한 실정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① 경주류 사행산업(경마, 경륜, 경정) 구매상한 규정의 실효성 제고 (농식품부, 문체부-사감위)
 - 전자카드를 통한 중복구입 및 도박중독 예방 (마이카드 활성화 및 중장기적으로 전자카드 확대 시행)
 - 과도한 구매방지를 위한 영업장 내 홍보 및 계도요원 등 확대 배치
- ② 경마 온라인 발매제도 도입으로 이용자 자율 규제 강화(농식품부)
 - 상한액 이상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실명제로 운영

3 향후 조치계획

- 제2차 사행산업 종합계획에 따라 전자카드 확대 방안 마련('14년) (문체부-사감위)
- 한국마사회법 개정(온라인 발매 근거마련)('14년) (농식품부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사행산업감독위	감독지도과	02-3704-0530,0534
농식품부	축산정책과	044-201-2311,2324

6-4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근절

1 선정사유

- 온라인 불법·유해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산에 따라 음란물 등 불법행위 정보의 유통경로가 다양화
- 이에 따라 음란물 등이 감수성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으나 사전 단속조치 미흡 등으로 청소년 성범죄 증가 등 사회적 피해가 확산 추세

< 인터넷상 불법·유해정보 처리 현황 >

- ▶ 음란물, 도박, 자살공모 등 온라인상의 불법·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(방심위)의 심의를 통해 삭제·접속차단 등 조치

< '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내역 >

구분	성매매·음란	도박	불법·의약품	명예훼손	자살공모	기타 법령위반	합계
건수	14,085	28,800	21,189	1,572	249	6,030	71,925

- ▶ 또한, 포털사 등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·심의를 통해 자율규제 시행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① (사업자 대상)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서비스 제공 및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물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법제화
- ② (소비자 대상) PC 및 스마트폰용 음란물 차단서비스를 위한 유해정보 차단 S/W 보급을 현행 450만건에서 '15년 600만건으로 대폭 확대
※ PC(350만건) 및 스마트폰(97만건)용 유해정보 차단 S/W 보급('13.8월 누적)

3 향후 조치계획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('14년)
- PC 및 스마트폰용 음란물 차단 SW 보급 지속 추진('14년)

부처 방송통신위원회	담당부서(과) 인터넷윤리팀	사무실 02-2110-1560,1553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1 선정사유

- 주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짜 술 불법 유통, 무자료판매 등의 탈법·불법 행위 지속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가짜 술 불법 유통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주류 유통 과정 전반에 걸친 단속 강화

① RFID를 활용한 가짜양주 및 무자료 주류판매 행위 방지

② 주류 병행 수입업자의 허위 저가통관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해 병행 수입업자의 수입관련 자료를 정식 수입업자의 자료와 비교·분석 강화

③ 대형매장의 주류를 대량 구입하여 불법 유통시키는 무면허 중간상에 대한 상시 감독 강화

- 무능력자, 지인 등의 명의로 구매하는 행위 철저 차단

3 향후 조치계획

- RFID를 활용한 「주류유통정보시스템*」 ('12.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)의 안정적 정착·운영 추진 (연중)

* RFID(무선주파수인식기술,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)를 활용하여 제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주류에 부착한 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주류 유통이력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

-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가짜양주·무자료 위스키 등 불법거래혐의자 단속·점검

- 2~3년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다른 주종으로 확대 여부 검토 (현재는 위스키에 한정)

- 주류 병행 수입업자의 품목별 세부 통관내역을 적기(1년에 2회)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의 업무협조 강화 ('14년 3월중·하반기)
 - 불성실 주류 병행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적시성 있는 주류유통조사로 불법거래행위 사전 차단
- 대형매장에서 일정기준 이상* 주류구입자에 대해 작성·제출하는 주류판매기록부를 분석하여 불법구입 혐의자에 대한 조사 및 점검 실시 ('14년 3월 이전 예정)

* 1인이 1회당 소주 2상자, 맥주 4상자, 위스키 1상자 이상 구입시 인적사항 제출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국세청	소비세과	02-397-1851,1862

6-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근절

1 선정사유

-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으나, 관리 부실 및 위반·악용하는 사례*가 다수 발생, 장애인의 불편 및 국민 불신 야기

* △사망 또는 폐차로 인해 반납·폐기되어야 할 장애인 표지의 관리부실 △장애인 주차전용구역 불법주차 △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반조 등

*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현황 : 1,131천건(주차가능 643 / 주차불가 488)

*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주차 과태료부과 현황

연 도	2010	2011	2012	2013. 6
과태료부과건수	8,992	12,191	27,463	22,407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① 부적정한 표지 사용을 차단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지를 일제 갱신하고 유효기간 도입 추진

* 자동차 검사주기와 연동하여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 설정 등

- ②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하다 적발 시 표지회수 또는 발급제한 등 제재 수단 도입

- ③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에 대한 단속용이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표지 디자인 변경 및 종류 단순화

* 유효기간 인식을 쉽게 표시하고, 현재 11개인 표지종류를 4개로 축소

3 향후 조치계획
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제17조 등) 개정(~146월)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보건복지부	장애인권익지원과	2023-8650,8644

7] 각종 사기, 불법 명의도용 근절

7-1 보험 사기 · 범죄 근절

7-2 보이스피싱, 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

7-3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방지

7-4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 · 범죄 방지

7-5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

7-1 보험 사기·범죄 근절

1 선정사유

-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추가 부담 야기
 - * 보험사기 규모 : '10년도 기준으로 연간 약 3.4조원 추정 → 1가구당 20만원, 1인당 7만원 보험료 추가 부담 (서울대·보험개발원, 2012)
- 금전적 피해를 넘어 생명·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와 연계되어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과 사후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근절대책 마련('09.6., '10.1., '11.1., '12.12)
 -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* 강력 추진
 - * 보험사 상품개발時 “보험사기 영향평가” 실시(4월), 과다보험 가입제한 등 계약인수時 심사 철저(1월),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심평원 심사 위탁(7월) 등
 - 검·경의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관계기관간 협력체계* 구축·운영
 - * ① 수사·금융·의료당국 등이 참여하는 「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」 운영
 - ② 금융·의료당국간 문제병원 정보공유 및 나이롱환자 공동조사
-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제재* 및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토록 제재 강화
 - * 보험설계자 등에 대해 보험사기 금지 의무 부과 및 위반시 등록취소 등 제재 부과

3 향후 조치계획

- 기발표한 대책을 적극 이행
 -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」*(박대동 의원, '13.8.27) 에 따라 추가 대책 추진
 - * 보험사기죄·보험살인죄 등 신설, 보험사 등의 보험사기행위 인지·보고 체계 등
- 보험업법 개정 추진

부처 금융위원회	담당부서(과) 보험과	사무실 2156-9830,9832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7-2 보이스피싱, 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

① 선정사유

-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는 34,582건, 3,666억원이며,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* 발표('12.1월) 이후 피해 규모는 감소 추세

* 지연입금제('12.5월), 지연인출제('12.6월), 합동경보('13.3·8월),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('13.9월) 등

- 다만, 최근 신·변종 사기*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

* (예) 메모리해킹 :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계좌번호와 이체금액을 무단 변경
청첩장 스미싱 : 청첩장 문자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앱 설치 및 개인정보 탈취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신·변종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, 금융, 사법·경찰 분야 전반에 걸쳐 '신·변종 사기수법에 대한 종합대책' 마련

① (통신) 사기문자차단 스마트폰앱(App) 개발·적용, 개인사칭 문자피싱 차단 등 사전 예방조치 강화 등

② (금융) 메모리해킹 방지 프로그램 개발·적용 등 금융거래의 보안성 강화, 대포통장 처벌범위 확대, 사후 피해구제 확대* 등

* 보이스피싱 특별법 개정안 : 구제범위에 대출사기를 포함(국회 계류중)

③ (사법·경찰) 해외범죄조직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·기획수사 강화 등

③ 향후 조치계획

- 「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」 논의를 거쳐 종합대책 확정('13년)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금융위원회	전자금융과	02-2156-9490,9493

7-3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방지

1 선정사유

-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, 대출·현금지급 등을 조건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휴대전화를 부정개통하는 행위가 지속 발생
 - ※ 명의도용건(3사) : ('10)4,130건 → ('11)3,809건 → ('12)3,914건 → ('13.6월)2,812건
- 부정개통된 휴대전화는 대부분 불법 유통조직을 통해 대포폰으로 거래되어 스팸발송, 소액결제,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수단으로 사용
- 최근 새로운 유형의 부정사용 수법이 등장하면서 현행 사후단속 중심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전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 추진 필요

【 미래부·업계 자율협의로 기추진중인 사전 예방대책 】 (~'13.9월)

- ① 온라인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을 공인인증서, 신용카드로 한정(휴대폰 인증 제외)
- ② 가입시, 대리인 개통허용안함 등 보안등급을 본인이 직접 설정하도록 의무화
- ③ 미성년자 가입시 온라인으로 부모를 확인하여 주민등록등본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방지
- ④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위한 통신사 약관반영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① 도난·분실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도난방지 기술 '킬스위치(Kill Switch)'를 '14년까지 모든 신규 스마트폰에 적용
 - * 휴대전화 분실건수는 94만건('12년)이며, '킬스위치'는 원격 또는 유심제어 등으로 단말기의 영구적 잠금·정보삭제 등을 할 수 있어 분실 후 타인의 사용 불가
- ② 기존에 영리 또는 범행 목적의 대포폰 매매·알선·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부족하였으나 신규로 처벌규정을 마련
 - *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 추진 (금전거래 목적 양도·양수시 과태료 처분)
- ③ 현재 이통3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'M-safer' 서비스*를 알뜰폰을 포함한 쏘 이통사로 확대
 - * M-safer : 서비스 개통 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의도용시 본인이 즉시 인지하도록 하는 알림서비스

③ 향후 조치계획

- 도난방지 기술 '킬스위치' 신규스마트폰 적용('14년)
⇒ 이통사 및 제조사와 협의완료('13.8월)하였으며, 현재 일부 단말기 출시중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('14년)
- 'M-safer' 서비스 확대('13.12월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미래창조과학부	통신이용제도과	02-2110-1930,1931

7-4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·범죄 방지

① 선정사유

- 대포통장 유통규모는 연간 4만건 수준으로 추정되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문제
- 대포통장 근절 대책*이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계좌 발급 후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건수가 상당규모 지속되고 있는 상황
 - *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철저 확인, 사기이용 의심계좌 정보 집중·공유, 의심계좌 보유자의 신규계좌개설 제한 등('12.11, '13.8 旣 시행)
 - '11.10월~'13.6월 기간중 금융범죄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된 예금계좌 규모는 약 8.7만건에 달함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('12.10월, '13.4월)
 - 계좌개설시 통장양도 불법성에 대한 설명·확인 의무화
 - 대포통장 사용억제를 위해 사기이용 의심계좌 정보의 집중·공유
 - 통장 양도고객에 대해 1년간 예금 신규개설 제한 등
- 위조 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의 개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은행 등이 안행부의 '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'를 활용토록 개선('13.8월)
 - * 현재 우리은행에서 시범실시중

③ 향후 조치계획

- 은행-안행부 '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' 연계 완료(14.하)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금융감독원	서민금융지원국	02-3145-8150
금융감독원	서민금융사기대응팀	02-3145-8128

① 선정사유

- 속칭 대포차*로 전국적으로 1.9만대 이상 운행되고 있으며 각종 범죄 등으로 연결

*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·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

- 과태료·범칙금 등 피해의 소유자 전가, 사고 후 도주 시 신원파악 및 보험처리 곤란 등 사고처리 미흡으로 제2의 피해가 우려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(이전등록절차 강화) 양수인의 미등록 문제 해소를 위해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권한을 강화

* 현재는 '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신청할 수 있다'로 규정(자동차관리법 제12조)

- (대포차 운전자 처벌근거 신설) 대포차량 운전자가 소유권자, 양수인, 양도인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일정 요건(상습 의무위반 등)에 해당할 경우 운전자를 양수인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검토

- (대포차량 단속방법 개선)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

- (차량수배) 도난, 분실, 범죄이용 및 무적차량 뿐만 아니라, 채권을 명목으로 점유하고 있는 차량에도 확대 방안 검토

- (번호판 영치) 자동차 정기검사이행, 자동차세, 과태료를 납부하는 대포차량의 경우에도 영치 할 수 있는 방안 검토

- (질권 설정) 질권설정이 금지된 자동차(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)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재방안 검토

- (단속정보 관리강화) 스마트폰용 단속앱(가칭 '스파이더앱') 개발 및 현장에서의 대포차 식별 등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분산된 단속정보*를 통합관리

* 의무보험 미가입(의무보험관리시스템), 세금미납(국세·지방세관리시스템), 정기검사 미필(자동차관리시스템), 과태료 과다 차량(범칙금관리시스템) 등

③ 향후 조치계획

- 자동차관리체계 등 관련 제도 개선 추진('14.1월)

부처 국토교통부	담당부서(과) 자동차정책과	사무실 044-201-3835,3844,3843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8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

8-1 장례식장·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

8-2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

8-3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

8-4 은행 꺾기 관행 개선

8-5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

① 선정사유

- 장례시장이 연간 5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한 반면, 장례식장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납품업체나 장의차량 업체를 지정하는 관행으로 인해 장례용품 가격이 원가의 2~3배에 달하고 대부분 강매
 - * 서울 대형병원 장의용품 이익률 : 고급대미(7.3배) 대미(5.6배), 안동포(2.7배) 등 ('11.7월, 연합)
 - 현금결제 강요, 영수증 편법 발행, 음식값 부풀리기 등의 문제와 함께 상조회사의 난립, 부실경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 증가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장례식장·상조업체·납골당간의 탈법적인 유착관계 근절
 - 자유업인 현행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전환 (복지부)
 - *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, 하위 법령에서 세부 신고사항(위생 및 안전 관련 구체적 시설 기준 충족 여부)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
- 소비자의 장례비용 절감 및 권익보호 강화
 - ① 장례용품 강매행위 금지·제재 규정 마련 (복지부)
 - ② 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가격 정보공개 강화 (복지부)
 - ③ 상조서비스 기준 마련, 예치금의 불법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 통보시스템 구축 (공정위·복지부·금융위)
 - ④ 장사업체, 상조회사에 대한 지도·감독 강화 (공정위·복지부)
 - ⑤ 장례 및 상조관련 위법·불편사항 신고 편의 도모 (공정위·복지부)
 - * 이용객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자체 콜센터(지역번호+120) 이용 방안 등 검토

③ 향후 조치계획

- 장례식장 신고제 전환·장례용품 강매 금지규정 마련 등을 위한 장시법 개정(14.6월)
- 장사정보시스템에 가격정보를 게시하도록 지속 독려(14.6월)
 - * 현재 1,035개 장례식장 중 1,024개소가 가격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게시 중
- 장례 및 상조관련 위법·불편사항 간편 신고 방안 검토 및 홍보(14.6월)
- 상조서비스 기준 마련 및 금융기관 통보시스템 구축 등(14.12월)
- 상조회사 직권조사 실시(14년 상반기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공정위	서비스업감시과	044-200-4502,4499
공정위	할부거래과	044-200-4829,4827
보건복지부	노인지원과	2023-8170,8163

8-2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

1 선정사유

- ‘혼례’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하고 상업적·물질적 예식으로 일관하여 혼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만혼·비혼의 한 원인이 되고 하객부담 또한 가중되어 사회적 문제로 작용

* 1쌍당 평균 결혼비용(주택마련 비용 제외) 1억원 넘어 : 남성 평균 5,414만원, 여성 평균 4,784만원(한국소비자원, '13.10)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① 공공시설 혼인예식장 개방 확대 및 혼례종합정보센터(www.weddinginc.org)를 통해 개방 현황 및 이용정보 제공, 민·관 협력 건전한 혼례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(여가부)
- ② 시민단체와 연계, 예비부부·부모 대상 올바른 혼례가치관 교육·정보 제공 및 검소한 결혼식 모형 보급·확산 (여가부)
- ③ 결혼식장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조치 (공정위)

※ 그간의 점검·관리 성과(공정위)

- 서울시내 특1급 호텔 20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('13.6.26.)하고,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꽃장식·무대연출 등 부대상품 동반구입 관행을 자진시정토록 개선
- 서울 소재 11개 대형 예식 전문업체의 예식장 이용약관 직권조사 실시 및 불공정약관 시정('13.3월)
- 전북 소재 소비자 단체(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·전북지회)가 심사 청구한 관할 지역 내 10개 대형 예식장의 불공정약관 시정('13.5월) 등

- ④ 호화결혼식 자금 출처, 탈세·탈루 여부 조사 (국세청)

3 향후 조치계획

- 민·관 협력으로 ‘고비용 혼례문화 개선’ 운동 상시 추진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공정위	서비스업감시과	044-200-4502,4499
국세청	조사2과	02-397-1131,1132
여성가족부	가족정책과	02-2075-8700,8702

8-3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

1 선정사유

- 산후조리원이 증가하면서 산후조리원 가격정보 미공개, 산모·신생아 피해시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 미비 등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불만·피해도 지속 증가 추세
 - * 산후조리원 증가 추이: 294개소('06) → 419개소('09) → 544개소('13.6월)
 - ** 소비자 피해상담(한국소비자원) : 510('10)→660건('11)→867('12)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산후조리원 이용 소비자의 피해보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의 해지, 사업자 의무 등 내용을 담은 **표준약관 제정** (공정위)
 - 입실 전·후 계약해지시 위약금 부과 기준 제시
 - 사업자의 의무사항 구체적 규정
 -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시 구제방안 등
- 유사시 안전대응을 위한 '이동식요람' 사용, 호흡기·위장관 감염 등 주요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신생아에 대한 **감염관리 기준 추가** (복지부)
 - * 현행 산후조리원 감염·안전관리 지침 주요내용 : 신생아 및 산모 건강관리, 신생아 감염관리, 급식·세탁물 관리, 시설 안전관리 관련 일반 기준 규정
- 감염·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**책임보험 의무화** (복지부)
- 산후조리원 운영실태 지속 점검·관리 강화(연 2회) (복지부·공정위), 관계 부처(복지부, 공정위, 지자체 등) **합동점검 및 시정조치** 실시 (복지부·공정위)

3 향후 조치계획

- **표준약관 사용권장·보급** ('13.12월~)
 - * 산후조리원 감염·안전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 포함
- **감염·안전관리지침 개정** ('13.12월)
- 감염·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 배상책임 보장 등을 위한 **모자보건법 개정** ('14.12월)
 - * 산후조리원 가격정보 게시의무 포함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공정위	약관심사과	044-200-4462,4450
보건복지부	출산정책과	02-2023-8490,8486

1 선정사유

-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꺾기 관행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출보다 보험·펀드 등 신종 꺾기가 성행
 - * 연도별 꺾기 적발 건수
11년(777건, 153억원) → 12년(1,899건, 658억원) → 13.1~9월(213건, 73억원)
-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꺾기 관행 근절 마련 필요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은행의 꺾기 관행 근절, 신종꺾기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꺾기 관행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 (10.14일 대책 既 발표)
 - ① (감독·검사체계 강화) 꺾기 규제의 법적 근거를 강화(시행세칙 → 시행령)하고, '14년 중 쏠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점검 실시
 - ② (신종꺾기에 대한 대응 강화) 보험·펀드에 대한 꺾기 규제 강화* 및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한 꺾기 규제**
 - *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, 월단위 환산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% 미만이라도 꺾기로 간주
 - ** 중소기업의 대표자·임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
 - ③ (꺾기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) 은행임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과태료 건별 산정·합산부과를 통해 금전제재 강화
 - ④ (은행의 꺾기 유인 차단) 성과평가시 꺾기위반에 대한 벌점을 확대토록 권고하고 「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」 활성화

3 향후 조치계획

-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(13.12월)
- 쏠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점검 (14년중)

부처 금융위원회	담당부서(과) 은행과	사무실 02-2156-9810,9813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8-5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

1 선정사유

- 공증 분야에서 비대면공증 등 각종 비위행위가 만연, 민원 발생
 - (집행증서) 대부업자 등이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자신의 직원을 쌍방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공증인에게 수십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강제집행 발생 등 민원 빈발
 - (번역문 인증) 여행사·유학원, 번역사 등이 번역에 관여하지 아니한 직원·택배기사 등을 번역인으로 지정하여 공증인에게 수십 건의 번역문 인증을 촉탁, 번역의 정확도에 대한 확인절차 형해화
- 징계를 받은 공증인도 대부분 임명·재임명을 해준 결과, 징계를 받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
 - * '09.1. ~ '13.7. 기준으로 새로 임명된 임명공증인 28명 중 공증 징계전력자는 1명, 재임명된 22명 중 공증 징계전력자는 9명

2 정상화 추진방안

① 집행증서 작성, 번역문 인증절차 정상화

- (집행증서) 금융기관의 대부계약 공증시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 스스로 선임한 대리인 출석 의무화 (채무자의 의사 확인 절차 강화)
- (번역문 인증) 번역문 공증시 원칙적으로 번역자가 출석하여 서약할 것을 의무화

② 징계처분을 받은 공증인에 대한 재임명 제한

- 5년간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증인에 대해 5년간 재임명(인가) 제한

3 향후 조치계획

- '13.10.1일 「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」, 「번역문 인증사무 지침」, 「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기준」 등 관련규정 既개정
- 개선대책의 철저 이행 및 추가대책 지속 발굴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법무부	법무과	02-2110-3178,3171

9 기업활동 · 민간단체 불공정관행 개선

9-1 본사-대리점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

9-2 온라인 포털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

9-3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행태 시정

9-4 기부금 · 성금 관리의 불투명성 개선

9-5 직능단체 훈 · 포장 대가수령 관행 개선

9-6 연예기획 분야 잘못된 관행 개선

9-7 체육단체의 불공정, 불투명성 개선

9-1 본사-대리점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

1 선정사유

- 본사가 대리점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구입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가 지속

< 대리점 관련 최근 적발·조치 실적 >

- 국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제공(계약해지), 판매목표 강제, 거래지역 제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 부과('13.2월)
-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, 부당한 이익제공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3억원 부과, 검찰 고발('13.7월)
-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에 대한 막걸리제품 구입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, 검찰 고발('13.9월)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본사와 대리점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리점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

① 범위반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 고시* 제정

* 유통기한 임박상품 밀어내기,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전가 등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정거래 기반 확립

② 유제품과 같이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관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거래기준* 마련

* 주문내역 변경, 판촉활동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자율적 관행개선 유도

-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·감시하여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제재

3 향후 조치계획

- 「특정 재판매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지정고시」 제정('14.3월)
- 유제품 분야 모범거래기준 마련('13.12월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공정위	시장감시총괄과	044-200-4489,4484

9-2 온라인 포털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

① 선정사유

- 국내 온라인 포털분야의 독과점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·강화되면서 다양한 불공정 문제 야기
 - * 대표적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하면서 △ 광고와 정보의 구분 모호, △ 계열사 부당거래, △ 검색지배력을 남용하여 인접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하는 등 불공정 관행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① 법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포털분야 모범거래기준* 마련
 - 포털 업체의 검색지배력 남용 제한
 - 검색서비스 제공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방해 금지
 - 검색서비스 제공시 소비자 기만행위 금지
 - 콘텐츠제공업자에 대한 포털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
- ② 온라인 포털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·감시 실시

* 온라인포털 업체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(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) 또는 제23조(불공정거래행위 금지) 위반사항

③ 향후 조치계획

- 포털분야 모범거래기준 제정('14년 상반기)
- 필요시 특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범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제재·시정 (계속)

부처 공정위	담당부서(과) 서비스업감시과	사무실 044-200-4502,4499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9-3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행태 시정

1 선정사유

-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으나, 사업자 편의 중심의 운영으로 소비자 피해 등 불공정 사례 증가

※ ‘티몬’ 등 4개 소셜커머스, 유효기간 지나면 환불금지 조항 등 시정(12.2.7) / 소셜커머스 업체 4곳이 유명 미용용품의 유사품을 정품으로 속여 팔다가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받음(13.1.8)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① 소셜커머스, 모바일쿠폰, 충전형 상품권 등 신유형 거래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 마련(연구용역 추진)

- 신유형 거래분야에 대한 약관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 적극 시정

- ② 소셜커머스, 모바일쿠폰 등 유형별 거래 실태 점검 및 제도·거래관행 개선

- 소비자 피해가 큰 모바일쿠폰 구매 전에 유효기간, 이용조건(유효기간 경과시 보상기준 포함),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「상품정보 제공 고시」 개정

- 「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」* (‘12.2.제정, ’13.9.개정)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

* 합리적 기준에 의한 할인율 및 가격 표시, 구매자수·판매량 과장 금지,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시 10% 가산 환불, 유효 기간 내 미사용 쿠폰 70% 환불 등

3 향후 조치계획

- 신유형거래분야 표준약관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(‘14년 상반기)
-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및 시행(‘14년 상반기)
-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·개선(‘14년 상반기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공정위	약관심사과	044-200-4462,4450
공정위	전자거래과	044-200-4467,4464

9-4 기부금·성금 관리의 불투명성 개선

① 선정사유

- 사회복지단체의 기부금·성금 등이 그 본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관행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·감독 미흡
- 관리·감독 강화, 정보공개 등을 통해 기부금품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

※ 시민단체 기부금, 불투명하게 걷어 불투명하게 써...횡령 다반사...시민단체 너무 많아 관리 손 뉘(‘13.7.31, 국민)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기부금품 모집·접수행위 외에 사용행위까지 검사범위를 확대 (안행부)
 - 현재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모집·접수행위 검사만 가능하나, 향후 사용행위까지 검사범위 확대
 - * 등록청(안행부장관, 시·도지사)이 사용행위에 대한 검사권한이 없어서, 모집자가 사용완료 후 결과 보고하기 전에는 부당사용 등 확인 곤란
- 기부금품 모집·사용내역 통합 공개 (안행부)
 - 현행 모집·사용결과에 대한 개별 홈페이지 공개(게시) 외에 정기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(게시)
 - * 모집단체의 개별 홈페이지에 모집·사용 결과가 공개되어 기부자가 일일이 해당 홈페이지를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고, 진행상황에 대한 수시 공개 미흡
- 사회복지공동모금 성금(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), 재해구호 성금(재해구호법) 등 개별법령에 근거한 성금도 기부금품법과 동일하게 개선 (복지부·방재청)
-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 등의 공시양식 개선 및 공시 대상 확대
 - 자산 5억원 이상(現 10억원)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3억원(現 5억원)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공시대상 확대
 - * (현행) 공시법인 수 5,432개(46%) → 6,572개(56%, 1,140개 ↑, '12년 기준)
 - 기부자의 기부결정을 돕기 위해 국세청에 제출·공시하는 양식 세분화 및 항목 추가*

- * ⑤세무확인과 회계감사, ⑥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, ⑦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, ⑧수익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, ⑨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

※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4개월 간 활동

- * 참석대상 : BH(국민소통, 경제금융), 기재부, 국세청, 회계기준원, 민간단체 등
- * 투명성 제고방안 검토(7.11) → 공시양식 개선안 토의(7.29) → 부처의견 종합(8.30) → 기부금단체 등 의견수렴(9.20) → 공시양식 확정(10.18) → 법령·규칙 개정안 확정(11.8)

③ 향후 조치계획

-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등 개정 추진('14년) (안행부)
 - * 현재 법률안 개정안 국회 계류 중(11. 29 발의, 정부안)
-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등 개정('14년) (안행부)
- 입법예고 후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*('14.1~'14.3월), 개정양식으로 공시 시작('15.4월), 기부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
 - * 상속·증여세법 시행령, 법인세법 시행령,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안전행정부	민간협력과	02-2100-2900,2892

9-5 직능단체 훈·포장 대가수령 관행 개선

1 선정사유

- 최근 정부 포상 추천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기준을 정하는 등 **협회·단체의 정부포상 비리가 ‘훈장장사’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 야기**

※ ... 직능연합 공적심사위 녹취파일 입수 ... “3000만원 채우면 동백장 추천 ”(동아, '13.7.2)
* 언론보도 이후 수사 진행 중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훈·포장 관련 비리행태를 사전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감시
 - ① 금품요구 엄금, 포상지침 위반하는 자체규정(협회·단체) 제정 금지 등 **비리행태 차단 규정을 「정부포상운영지침」에 명시***(13.7 既개정 및 부처 통보)
 - * 개정사항 : 후보자 명단 3배수 제출, 금품요구 엄금, 포상지침 위반하는 자체규정 제정 금지, 후보자 선발기준 사전 검토, 협회단체관련 체크리스트 관리 규정 등
 - ② 협회·단체의 정부포상 운영실태를 점검*하고, 개설된 「정부 포상 비리신고 코너**」 운영을 강화
 - * 협회·단체관련 정부포상 운영실태 일제점검 및 조치·통보('13.4~7월)
 - ** 정부포상 비리신고 코너 개설·운영('13.4월~) : 비리접수 시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조사 →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
- 포상제도 관련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**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**(「대한민국 상훈제도 종합 개선방안」 마련)
 - ① (조사·심사의 공정화) ▲서류심사 위주 → **공적 현장실사 의무화**
 - ② (관리의 합리화) ▲포상규모, 전년기준 관례적 적용 및 포상 신설·폐지, 판단기준 부재 → **규모 산정 및 판정기법 개발·적용 등**
 - ③ (사후관리) 비리·불법 추적 관리 부실 → **선진관리 기법 연구 및 운영실태 정기 점검**

3 향후 조치계획

- 「대한민국 상훈제도 종합 개선방안」 수립('13.12월) →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지침 개정 시행('14년초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안전행정부	상훈담당관실	02-2100-3155,3156

9-6 연예기획 분야 잘못된 관행 개선

① 선정사유

- 연예인 지망생의 급증에 따라 연예기획사의 사회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금전적 피해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례까지 발생
 - 계약파기·매니저사칭·이중계약 등이 총 165건 중 35%인 58건, 성폭력·사기 등 형사범 사건이 45%인 75건에 이르고 있음
(대중문화산업 윤리강령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결과)

기획사 대표, 연예인 지망생으로부터 억대 갈취(헤럴드경제, '12.10.9)
과거 소속사 대표, 성상납 요구했다(아츠뉴스, '12.4.15)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대중문화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「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법안」 제정 추진
 - ① 연예기획사 표준계약서 제정 법적 근거 마련
 - ②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및 인권 보호조치를 계약서에 명시토록 의무화
 - ③ 성범죄자 등에 대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자격 제한
 - ④ 대중문화예술인,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
- 민간의 자율적인 정화활동 지원을 위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윤리 강령 제정·선포

③ 향후 조치계획

- 대중문화예술산업 윤리강령 제정·발표(13.11월)
- 「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안」 제정(14.6월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문체부	대중문화산업과	02-3704-9691,9382

9-7 체육단체의 불공정·불투명성 개선

1 선정사유

- 체육단체의 불합리한 운영, 불공정 사례, 비리 및 이권개입 등 공정성 훼손 사례 지속 제기
 - 임원 장기재직, 가족·친지 중심의 이사회 구성, 특정학교 연고자 임원진 다수 점유, 학연·지연 등에 따른 편파판정 논란 지속

* 대학 선수들까지 '성적 조작하며 코치·선배에게 맞기 다반사'(한국, 8.13)
 '체육계 전반 비리 뽑는다'...칼 빼든 정부(문화, 9.2)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「체육단체,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」 既 발표(10.7일)
 - (임기 제한) 제한 없음 → 1회에 한하여 중임 허용
 - * 단, 중임 제한은 국제스포츠기구 영향력 확대 및 종목 육성 기여도 등을 감안, 엄격하게 예외 적용(임원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)
 - (공무원 결격사유 준용 강화)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제대로 준용되도록, 신원조회 실시 지원(국민체육진흥법 개정)
 - * 現 가맹단체 규정상 준용케 되어 있으나, 법령 근거 없는 민간단체의 신원조회 불가능
 - (특정학교 비율 규제) 제한 없음 → 임원의 20% 이내 제한
 - (경기단체 책임성 확보) 부진단체 지정제도 도입 및 3회 부진단체 지정된 경우, 임원 해임 및 체육단체 임원 진출 금지
 - * 부진단체 지정시 지원금 삭감(1회), 단체지위 강등(2회, 정가맹→준가맹→인정) 등 불이익 부여, 우수단체는 인센티브 부여
 - (경기 공정성 제고) ▲ 심판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및 독립성 보장
 ▲ 심판 평가제 및 승강·퇴출제도 도입 ▲ 비디오 재판독 의무화 (최소 1개월) ▲ 심판아카데미 설립 등 전문심판 육성
 - (관리감독 강화) ▲ 중앙경기단체에 시도경기단체 감사권 부여
 ▲ 대한체육회에 '공정체육센터' 설치

3 향후 조치계획

-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관련 규정 개정('13.10월~)
- 종합감사 완료 후('13.12월) 보완 대책 추가 발표

부 처 문체부	담당부서(과) 체육정책과	사무실 02-3704-9811,9832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10 정치 · 사법 · 노사 분야 비생산적 관행 개선

(향 후 확 정)

단기 개선과제

①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성 또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

- 1-1 공공SW사업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
- 1-2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 철폐
- 1-3 공공택지개발시설 인수 지연 관행 개선
- 1-4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등 관행 개선
- 1-5 재외공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요구 관행 개선
- 1-6 공공기관의 학자금 무상·초과지원 관행 개선
- 1-7 비리 공무원 당연퇴직제도 개선
- 1-8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
- 1-9 검사 비위로 인한 불법수익 박탈
- 1-10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
- 1-11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관행 개선

1-1 공공SW사업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

① 선정사유

- 공공SW 분야에서 사업의 “전부 또는 일부”에 대한 하도급(재하도급) 관행이 일반화
 - 특히 전부 하도급의 경우 공공 SW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익의 일정부분을 떼어가는 관행으로 하도급에 참여하는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저해하고 공공 SW사업의 질도 저하
 - ※ 현행 『소프트웨어진흥법』(제20조의3)은 SW사업 계약체결 시 사업자에게 도급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
 - ※ SW산업 중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IT서비스(SI) 분야는 하도급 비중이 60% 이상이며 3차 이상의 하도급이 적지 않은 상황

【 SW 하도급 관련 언론보도 】

- ① 미디어오늘('13.10.2) 갑을병정 무기관계 ‘하도급’ 끊어야 SI 노동자가 산다
- ② 디지털타임즈('13.8.15) 중소SW 저가입찰에 허리 휨다
- ③ 아주경제('13.6.17) 하도급에 또 하도급..발주처부터 7단계 거쳐야 개발자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중소 SW기업에 피해가 크고, 공공SW사업의 품질을 저해하는 ‘전부 하도급’은 전면 금지하되,
 - 원도급자 수행비율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, 하도급규제 민간 확대는 자율적 추진

③ 향후 조치계획

- 「SW산업진흥법」 개정 추진('14년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미래창조과학부	SW산업과	02-2110-1830,1833

1-2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 철폐

① 선정사유

- 정보화사업 등 공공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실적금액 등 과거실적에 과도하게 의존
 - 기술력은 있으나 과거 납품실적 등이 부족한 창업초기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문제점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과거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초기 중소기업도 기술력을 구비할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(조달청·중기청)
 - ① 창업초기 기업의 참여가 많은 고시금액(2.3억원) 미만 입찰에서 경영상태와 신인도 항목 평가시 우대
 - * 경영상태 만점 부여,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
 -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입찰에서 창업초기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납품실적, 생산기술축적 항목 평가시 우대
 - ② 용역관련 2.3억 원 미만 협상 계약 시 과거 실적평가항목을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
 - ③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기업 제품 발굴을 위해 '우수조달물품 지정' 평가시 우대(가점 부여)
 - ④ 납품실적 충족기준 완화 : 3년 내 실적 → 5년 내 실적
 - 물품구매 적격심사 실적평가지 실적인정기간을 3년 → 5년으로 완화

③ 향후 조치계획

- 「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」, 「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기준」,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기준」 등 개정 (조달청 고시, 13년말)
- 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」 개정 (중소기업청 고시, 12월 / 10억원 이상 경쟁제품 구매시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조달청	구매총괄과	070-4056-7210,7302
중소기업청	공공구매관로과	042-481-4374,8918

1-3 공공택지개발시설 인수 지연 관행 개선

① 선정사유

- 택지개발사업 준공 등으로 시설물을 공용 개시할 조건이 구비된 경우 관리청(자치단체)은 시설물을 인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, 의도적으로 인수를 거부하여 유지관리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만연
- 또한,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공공시설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하자담보 책임증권 채권자 명의로 해당 지자체로 변경된 뒤에도 관리청은 수목하자 및 관리공사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
 -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하자보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사업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 감수하는 관행 계속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택지개발지구내 설치된 공공시설은 사업이 준공이 되면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관리청(지자체)에 귀속*되어야 하나,
 - *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
 - 지자체의 인수거부로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관행 개선을 위해 세부 규정 보완 추진
- ⇒ 사업준공에 따른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점을 명확하게 하고, 인계인수에 따른 공공시설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명확하게 하도록 지침 개정

③ 향후 조치계획

-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 개정('14.6월)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국토교통부	신도시택지개발과	044-201-3434,3438

1-4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등 관행 개선

① 선정사유

- 국민의 비난을 받는 범죄로 형집행 중인 사회지도층, 고위공직자가 일반 수형자와 동일한 기준에서 가석방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국민신뢰 하락
- 치료목적의 형집행정지자가 치료이외의 일탈행위를 하는 사례 빈번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대폭 강화 (법무부, 「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새로운 가석방 정책」 既 발표 '13.8월)

-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지도층, 고위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불허
 - 다만, 수용생활 중 특별히 모범이 되는 수용생활을 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석방 허가여부 심사 가능
- 반면, 수용생활 중 자격증 취득, 직업훈련 수료 등 사회복귀를 위해 성실히 생활하는 일반 모범수형자는 가석방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
- 교정재범예측지표*를 심사기준에 반영, 재범가능성에 대한 평가 강화
 - * 교정재범예측지표 :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재복역 위험이 낮은 1급부터 가장 높은 5급까지 구분 판정 ('11년 교정본부에서 개발)

- 형집행정지 시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(법무부, 「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」 <법무부령>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)

-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때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형집행정지 목적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과
- 형집행정지사 관찰시 형집행정지 사유 존속여부 외에 부과된 조건의 준수 여부를 관찰·보고하도록 개선

※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'13. 7월부터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, 심의 위원으로 의사 2명 이상 지정,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 지침」(대검 예규) 개정안 시행 중

③ 향후 조치계획

- 가석방제도 개선안 및 형집행정지제도 개선안 철저 이행
- 각급 기관에 대한 지속 점검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법무부	분류심사과	02-2110-3603,3604

1-5 재외공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요구 관행 개선

1 선정사유

- 국내인사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 지원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지침*이 존재하나, 방문자측의 과도한 요구 및 공관의 관행적 지원으로 동 지침이 엄격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
 - * ‘국회의원의 해외여행시 예우에 관한 지침’, ‘공직자 해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’ 등
- 이로 인해 재외공관의 행정력 낭비 및 통상적인 업무수행 부담 초래
- KOTRA 해외무역관도 과잉‘의전서비스’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 제기
 - * KOTRA 해외무역관도 ‘한국 주요인사 방문 지원 지침’에 따라 국내인사 방문 지원

2 정상화 추진방안

< 재외공관 > (외교부)

- 국내인사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의 지원 범위를 다음과 같이 엄격히 적용
 - ① 공직자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의 지원은 본부가 허용·지시한 공식 방문에 한정
 - ② 국외출장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은 공문을 통해 외교부에 지원요청 세부사항(공항 출영송, 일정주선, 차량지원 등) 사전 협조 요청
 - ③ 공항 귀빈실 사용은 장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, 주재국 관례 존중
 - ④ 주요공관*에서의 공항 출영송은 1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, 정부대표·정부사절단의 경우 지원 가능
 - 기타 공관의 경우, 방문 목적의 중요도, 치안정세 등에 따라 판단
 - * 공관의 업무량, 방문 대표단 빈도 등을 감안, 추후 지정
 - ⑤ 일정주선, 안내 및 차량지원은 초청기관의 지원을 우선 활용하되, 초청기관측 지원 미제공시 원칙적으로 정부대표 및 정부사절단에 한해 지원
 - 단, 방문 목적의 중요도, 대중교통수단 활용 가능 여부, 공관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
 - ⑥ 오·만찬은 원칙적으로 정부대표, 정부사절단 또는 1급 이상에 대해 방문기간 중 1~2회 지원
 - 여타 인사의 경우 방문 목적의 중요도, 협의 필요성 등을 감안, 사안별로 방문지역 공관장이 지원 여부 결정

< 해외무역관 > (산업부·KOTRA)

- (지원대상 명확화) 현지 방문지원 대상 및 범위를 합리화
 - (범위) 통상진흥, 투자유치, 국제협력 등 공식 및 국제행사 참가 방문하는 대상자(하기 3개분야)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현지 방문지원
 - (대상) 공무원, 정치인, 유관기관 3개 분야 고위급 지원
 - ① 공무원 : 중앙부처 국장급 및 이에 준하는 공직자
 - ② 국회 : 국회의원 및 전문위원 이상
 - ③ 유관기관 : 유관분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
 - * 공식 정부대표단 및 사절단(외교부 공관 지원)은 지원대상 포함
 - * 공사 사업분야 관련 기관(산업위, 산업부, 기재부 등)의 방문시 탄력적으로 지원
 - * 제외대상 : 정부기관에서 무역관 감사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, 현지 체류가 아닌 경유 목적 일시 방문, 국내 일반기업 임직원 지원
- (지원내용 구체화) 공적으로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회의 및 면담 등을 위한 방문에 한하여 제한적인 업무협조 지원
 - ① 기본지원 : 현지 경제동향, 방문안내 등 정보제공, 체류관련 단순예약 지원 등
 - * 공항출영송 : 주재지역 재외공관과 협력, 불가피한 사정에 한해 제공
 - ② 선택지원 : 간담회, 기관 섭외 등 일정주선, 통역·차량 주선 또는 지원 등
 - * 통역 및 차량지원은 방문기관 비용부담 원칙
 - ③ 기타 : 방문목적, 현지 치안, 무역관 지원 여력 등을 감안, 탄력적으로 적용
- (프로세스 공식화) 주요인사 소속기관에서 사전 공식요청을 통해 지원 범위 및 세부 지원내용을 사전 협조 공식화
 - (대상기관) 방문목적 및 지원범위에 대해 사전협의 및 공식요청
 - (KOTRA) 내부 담당부서의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해외무역관 지원 및 해외무역관 지원업무 수행
- (수혜자 부담원칙) 주요인사의 현지 지원시 소요예산의 경우,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전 비용부담 안내 고지
 - 불가피한 최소한의 현지경비는 해외무역관 운영경비로 활용

③ 향후 조치계획

< 재외공관 >

- 재외공관의 관련 규정 이행 강화
 - 재외공관의 실정을 반영하여 규정 현실화
 - “지원내역 일지” 관리 및 본부에 정기 보고 의무화
- 재외공관 자체 감사시 지침 준수 여부 점검

< 해외무역관 >

- KOTRA 내부 관련 지침 개정 및 절차 준수 안내
 - 해외무역관의 실정을 반영하여 지침 현실화
 - 전직원 대상 해외주요인사 지원 지침의 홍보 및 프로세스 교육
- 해외무역관 자체 감사시 지침 준수여부 점검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외교부	창조행정담당관실	02)2100-7129,8263
산업부	무역진흥과	02-2110-4834,5323

1-6 공공기관의 학자금 무상·초과지원 관행 개선

① 선정사유

- (대학학자금) 대학학자금의 무상지원을 금지한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」 규정에도 불구하고 15개 공기업에서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고, 지급액*도 증가

*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급액 : ('10) 434억원 → ('11) 391억원 → ('12) 505억원

- (초중고 학자금)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초중고 학자금 규모도 증가*

* ('10년) 1,275백만원 → ('11년) 2,021백만원 → ('12년) 2,154백만원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무상 및 초과지원 관행 폐지

- ① 기관예산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대학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규정* 준수여부를 점검하고, 초중고 학자금지원 기준을 신설

*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, 융자방식으로 전환('13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)

-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임·직원의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

-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하여 편성지침 위반 기관에 불이익 부여
 - 평가편람에 학자금지원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명시하는 등 평가지표 구체화

③ 향후 조치계획

-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보완 ('14.1월)
- 학자금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('14.6월)
- 경영평가 평가지표 개선 ('14.6월)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기획재정부	경영혁신과	044-215-5610,5615
기획재정부	평가분석과	044-215-5552

1-7 비리 공무원 당연퇴직제도 개선

① 선정사유

- 직무관련 횡령 및 배임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나,
 -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 분리선고 근거가 없어 횡령·배임과 사기죄 경합으로 1000만원 벌금형을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를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
- ※ 국가공무원법(제69조)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관련하여 **횡령 또는 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**을 받는 경우를 **당연퇴직** 사유로 규정
- 다만 **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합범**의 경우 형법상의 경합범 처벌규정(제38조제1항)에 따라(경합범에 대해 각각 범죄 구분하지 않음) **당연퇴직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**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횡령·배임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, **분리선고**(각각의 범죄를 구분하여 벌금형 선고)하도록 국가공무원법에 **형법의 특례 규정** 마련

※ 참고사항

- 공직선거법(제18조)에 유사 입법례*가 있으며, 형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됨
- * 선거법과 다른 범죄 경합범에 대해 법원이 분리선고하도록 함

③ 향후 조치계획

- 국가공무원법 개정(국회 안행위 계류 중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안전행정부	인사정책과	02-2100-1702,1709

1-8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

1] 선정사유

- 그간 교장 임용 제청 시, 과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▲승진 제한기간이 경과하고 ▲법령 및 관계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용 제청을 해 옴
 - *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상,
 - 승진제한기간(강등, 정직 18개월, 감봉 12개월, 견책 6개월) 미경과시 임용 제청을 배제하고, 중임의 경우는 4대 비위(성폭력, 금품수수, 성적조작, 학생에 대한 폭력)에 해당하면 승진제한기간 경과여부 관계없이 임용제청 배제
- 이에 대해 교장은 다른 직종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교장임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

2] 정상화 추진방안

- 교장 임용제청 배제 기준을 당초 ‘승진제한기간’에서 ‘징계기록 말소기간’으로 기준을 강화
 - 단, ‘4대 비위’의 경우는 무조건 임용제청 배제
 - * 국가공무원복무·징계에규상의 징계기록 말소기간(강등 9년, 정직 7년, 견책 3년)
- 임용 제청 제한 강화를 포함,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교장임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

3] 향후 조치계획

- 「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(훈령)」 등 개정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교육부	교원정책과	02-2100-6688,6689

1-9 검사 비위로 인한 불법수익 박탈

① 선정사유

- 현행 검사징계법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비, 금품 관련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 대하여 금전적 이익을 박탈하지 못하는 상황
 - * '13.6.5. 대검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서 '징계부가금 제도 신설' 권고
- 반면, 국가공무원법*에 따라 일반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조항에 따라 금전적 이익의 5배까지 박탈

*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(징계부가금) ①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, 공금의 횡령액·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.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금품관련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 대하여 금전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금품수수,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요구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규정 신설 (법무부, 「검사징계법」 개정안 6.14 입법예고)

【「검사징계법」 개정안 주요내용】

-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, 공금의 횡령액·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구 (제7조의2 신설)
-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처분 취소 등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제7조의3 신설)

③ 향후 조치계획

- 「검사징계법」 개정 추진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법무부	검찰과	02-2100-4193

1-10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

1] 선정사유

- 인천공항공사 등 일부 공기업의 경우 국민 세금으로 임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 제기
 - * (인천공항공사) 공항인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하늘고 신설(11.3/공항종사자 자녀비율 44.4%), 감사원은 정관 개정없이 학교신설 문제제기, 개선방안 지시(11.7)
- 일부 기업에서 설립한 학교에서도 입학정원의 일정비율* 임직원 자녀 할당과 관련하여 특혜논란 제기
 - * 포항제철고(60%), 광양제철고(70%), 현대청운고(15%), 하나고(20%)/충남삼성고(70%)

2] 정상화 추진방안

- (공기업 운영학교) 교육부-해당 공기업 소관부처간 협업을 통해 설립 단계에서 공기업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, 임직원 자녀비율의 적절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규제
- (기업체 운영학교) 임직원 자녀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시도교육감이 판단하여 과도한 경우 재지정 시에 비율을 축소하도록 조치
 - * 기업체(공/사) 설립학교 입학정원 비율 등은 시도교육감 승인을 얻어 학교장 결정

3] 향후 조치계획

- 기업체 설립 학교 임직원 자녀할당 비율 적정성 검토 및 축소 추진
 - 5년 지정기간 만료 후 시도교육감이 성과평가를 통해 해당 학교의 재지정 여부 결정시 임직원 자녀할당 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교육감에 권고
 - * 성과평가 일정 : 포항제철고, 광양제철고, 현대청운, 하나고('14), 인천하늘고('15), 충남삼성고('18)

※ 초·중등교육법(제91조의3)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마다 시·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교육부	학교정책과	02-2100-6418,6492

1-11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관행 개선

① 선정사유

- 고3 학생들이 대입 수능시험 종료 후 방학 때까지 정상적 수업활동이 어려우면서, 파행적 교실 현장 매년 반복
 - * "수능 후 고3 수업, 교실서 눕고 자고 게임까지"(KBS, 11.20)
- 일부 학생·학부모는 △대입 논술, 실기 준비를 위한 학원 출석을 위한 단축수업 요구 △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허용 등 주장
 - * 경기도 교육청, 수능 이후 고3 단축수업 금지 조치에 대해 학생·학부모 반발 (한겨레, 11.13)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수능 일자 및 수능성적 통지 일자를 점진적으로 늦추고, 그 이후 기간을 진학상담, 진로지도 등으로 활용
- 고교별 진학, 취업, 교양, 사회생활 준비, 봉사 등 고3 졸업예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

③ 향후 조치계획

- 2015학년도 수능부터 수능일자 단계적 조정
 - ※ 수능 일자 : 현행 11월 1주, 2015·2016학년도 : 11월 2주, 2017학년도 : 11월 3주
- 고3 수능 이후 학사운영 우수 사례 발굴 보급(시·도교육청, 학교) : '14년~

부 처 교육부	담당부서(과) 창의교수학습과	사무실 02-2100-6289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2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절차

2-1 휴대전화 위치정보조회 제한 완화

2-2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기준 조정

2-3 예술·체육요원 병역편입기준 개선

2-4 장애인의 징병신체검사 면제 기준 조정

2-5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

2-6 법인세 신고 및 비축물자 인수서류의 전자신고 허용

2-7 KS와 기술기준 간 중복인증 일원화

2-8 과세정보 공유 제한 제도 개선

2-1 휴대전화 위치정보조회 제한 완화

① 선정사유

- 119상황실에서는 긴급구조를 위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시 위치정보주체*(구조대상)와 신고자*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 요구
 - * 위치정보 주체(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) : 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
 - * 신고자(위치정보요청자) : 본인, 배우자, 2촌 이내의 친족, 미성년후견인
-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, 특히 주민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야간에는 상황실에서 가족관계 확인 및 긴급구조 조치 곤란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신고접수 즉시 119상황실 시스템에서 신고자와 구조대상자간의 관계를 조회, 신속한 구조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 - ① 119상황실에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에 접속·열람할 수 있도록 협의 (소방방재청-대법원간 협의)
 - * 가족관계 전산정보의 활용은 대법원 협의사항(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)
 - ②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조회 시 신고자와 위치정보주체(구조대상)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(방통위)
 - *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 중

③ 향후 조치계획

-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4년 1/4분기)
- '119상황실 ↔ 가족관계전산정보' 연계시스템 구축('14년 2/4분기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소방방재청	119생활안전과	2100-8931,8934
방통위	개인정보보호윤리과	02-2110-1520,1523

2-2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기준 조정

① 선정사유

- 생계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면제 관련 연령기준이 30년 전 연령기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시대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

<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 >

- 가족 중 부양의무자(20~54세의 남성, 20~44세의 여성)가 없고 피부양자(19세 이하의 남녀, 60세 이상의 남성 및 50세 이상의 여성)만 있는 경우
-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(피부양자수가 남성은 3명이상, 여성은 2명이상)을 초과하는 경우

- 부양의무자, 자활가능자, 피부양자 등 연령기준이 30년간 그대로 유지됨으로 인해 수명연장, 취업률 증가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
 - 다른 사회복지제도와 비교해도 편차*가 커서 형평성 문제 발생
- *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연령(18세~64세),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(65세 이상) 등이 연령 기준임에도 불구하고, 병역법상 기준은 과도하게 짧게 규정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부양의무자, 자활가능자, 피부양자 연령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
- ① 병역의무자가 입대하더라도 남아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 연령을 현재 남성 20~54세, 여성 20~44세에서 남녀 공히 19~59세로 확대
- ② 부양받지 않아도 자활가능한 연령은 현재 남성 55~59세, 여성 45~49세에서 남녀 공히 60~64세로 확대
- ③ 피부양자 연령은 현재 남성 19세 이하 60세 이상, 여성 19세 이하 50세 이상에서 남녀 공히 18세 이하, 65세 이상으로 확대

③ 향후 조치계획

- 병역법 시행령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개정('13.12월), 시행(14.1.1)

부처 병무청	담당부서(과) 자원관리과	사무실 042-481-2912,2966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2-3 예술·체육요원 병역편입기준 개선

1 선정사유

- 예술·체육요원 편입에 대해 병역특혜라는 인식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대회에 혜택이 편중돼 있어 분야별 편입기회에 불균형 문제 제기
- 예술·체육요원에 편입된 이후 개별 창작 등 자유로운 활동으로 일반 국민은 사실상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생각

- 태생적 사생아 '예체능 병역특례제', 이번만은 제대로? ('13.4.15 미디어 오늘)
- 올림픽, 아시안게임보다 더 권위있는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은 未인정, 무용 분야 편입비율 과다(58.7%) 등 문제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(체육요원) 편입대상 평가에 올림픽, 아시안게임 외에 세계선수권 대회도 포함하고, 입상성적별 점수를 부여해 일정점수에 도달하면 편입하는 「누적점수제」 도입
 - 현재 올림픽 동메달 이상, 아시안게임 금메달 1회만 획득하면 바로 대상에 편입됨에 반해, 더 권위가 있는 세계선수권대회는 메달을 획득하더라도 편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
- (예술요원) 무용, 음악, 국악 등 분야별로 편입비율의 형평성 제고
 - 예술요원의 경우 무용분야 편입비율(58.7%) 과다하여 타분야와의 편입기회에 불균형 문제 지속 제기
- 복무기간 중 공익성 강화를 위해 해당분야 유소년 교육, 무료공연 등 일정시간 재능기부를 의무화

3 향후 조치계획

- 예술·체육계 및 유관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안 확정(13년말)
- 병역법 개정('14년) 추진(15년 1월 시행목표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병무청	사회복무정책과	042-481-3002,3006

2-4 장애인의 징병신체검사 면제 기준 조정

1 선정사유

- 일부 장애인 등록자는 편의 차원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로 병역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이 과정에서 관련제도 미흡으로 군 복무 합격판정자가 병역면제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
 - 중증장애인은 문제가 없지만, 경증 장애(5-6급)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병역법 상 징병신체검사 판정기준이 달라 병역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발생

* 사례 ① : 등록 장애인 중 일정질환유형(19개)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면제 가능
사례 ② : 징병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을 판정받은 이후 동일 질병으로 새로 장애인진단 받아 관련서류 제출시 서류심사만으로 면제 가능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장애인 진단을 받은 자 중 경증장애의 경우 징병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면제 가능한 범위를 대폭 축소
 - 장애인 진단을 받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질환유형을 확대 (19개 → 75개)
- 이미 병역판정을 받은 자가 새로이 병역면제 신청시 신체검사 의무화
 - 징병신체검사시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받은 자가 동일 질병으로 새로 장애인 진단을 받아 면제 신청시 서류심사만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징병신체검사를 받도록 변경

3 향후 조치계획

-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('14년 시행)

부 처 병무청	담당부서(과) 징병검사과	사무실 042-481-2913,2916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2-5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

1] 선정사유

- 최근 대구 LPG 사고 등 LPG 관련 사고·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, 가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
 - 특히, 대중의 이용 빈도가 높은 미용실, PC방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*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상 **완성검사**** 대상에서 제외되어 **안전 사각지대**
 - * 저장능력 250kg미만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LPG를 사용하는 비주거용 사업장
 - ** LPG설비에 대한 개조 및 공사가 완성됐거나 또는 판매소, 저장소가 완성되었을 때 지자체로부터 검사를 받음
- 완성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 금속 배관 대신, 호스설치, 연소기 전단 중간밸브 미설치 등 **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음**
- 최근 5년간('08~'12) LPG 사용시설 사고 405건 중 **완성검사 비대상 시설**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368건으로 **90.9%를 점유**



< 부적합하게 호스로 설치된 시설 > < 적합하게 배관으로 설치된 시설 >

2] 정상화 추진방안

- 미용실, PC방, 사무실 등의 소규모 LPG 사용시설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**완성검사**를 받도록 하여 국민 안전성 제고
 - * 연간 약 5만3천개소의 소규모 LP가스 사용시설이 완성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
- 다만, 규제의 효율성 및 사용자의 검사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**검사신청 주체를 현재 사용자에서 시공자로 변경**
 - *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국회 심의중

3] 향후 조치계획
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('14년 2/4분기)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산업통상자원부	에너지안전과	02-2110-5441,5446

2-6 법인세 신고 및 비축물자 인수서류의 전자신고 허용

1 선정사유

- 법인세 납부는 전자신고가 가능하나, 재무제표 부속서류*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수동으로 직접 제출할 필요

* 외감법 법인 등이 작성한 재무상태표·포괄손익계산서·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)의 부속서류(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)

- 또한,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비축물자를 인수하려면 인수건별로 해당 지방청을 방문하여 각종 인수서류(인감증명서, 위임장, 인수증 등)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 초래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현재 법인세 전자신고시 서류형태(hard copy)로 별도 제출하는 재무제표 부속서류 일체를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(국세청)
- 비축물자 인수시 필요서류를 지방조달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식에서 업체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(조달청)

① (인수서류 제출 전산화) 이용업체가 비축물자 인수 시 필요서류를 나라장터에 사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출고담당자가 제출서류를 확인함으로써 별도의 서류제출 생략

② (사용인감 온라인 이중 등록 생략) 입찰참가 자격을 위해 기 등록된 업체가 비축물자를 인수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을 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상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체

3 향후 조치계획

-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('14.12월)
 - 별도 제출 부속서류 일체 전자제출 가능 내용 추가
-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반영 예정('15.2월)
- 「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비축사업자 등록·이용약관」 개정 ('13.11월) 및 나라장터에 비축물자 이용업체 사용인감 이중등록 생략(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사용인감 사용) 기능 구축 ('13.12월)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국세청	법인세과	02-397-1801,1812
조달청	원자재총괄과	070-4056-7183,7195

2-7 KS와 기술기준 간 중복인증 일원화

1] 선정사유

- '62년 도입된 국가표준제도는 품질제고와 산업발전에 기여하였으나, 그간 체계적인 정비가 부족하여, 기술기준과 표준의 이원화*, 국가표준 수의 과도한 증가** 등으로 인해 기업 부담 증대

* 미국, EU는 기술기준에서 표준인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109개 법정인증제도의 기술기준과 KS가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음

** 연도별 국가표준 종수 : ('01) 12,596 → ('04) 19,865 → ('09) 23,372 → ('12) 24,129

2] 정상화 추진방안

- (기술기준) 기술기준에 KS를 인용하도록 개정하여, 동일 제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으로 법정인증과 KS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 불편 및 부담 해소
 - 산업부 소관 전기용품(TV, 냉장고 등)과 공산품(가구, 압력솥 등)의 안전 기준 800여종과 해당 KS의 일치화 추진
 - 각 부처 소관 기술기준의 제·개정시 규제영향평가(국조실)를 통해, 인증중복 해소
- (표준 수 증가) 산업 발전 및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, 현행 KS 표준을 조사하여, 시장활용도가 낮은 표준은 폐지하고, 국민 불편 표준은 제(개)정

* 예) 폐지 - 카세트 테이프, 타자기 등 / 제(개)정 - 층간소음방지, 가전제품 호환 등

3] 향후 조치계획

- KS 제·개정 고시,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기준 운영요령 개정('14년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산업통상자원부	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	02-509-7258

2-8 과세정보 공유 제한 제도 개선

① 선정사유

- 각 기관의 과세정보 요청에 대해 세정당국(국세청, 관세청)이 **개인 정보보호 측면(국세기본법 §81의13 비밀주의)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보공유가 제한**
- 과세정보 수요에 대해 과세정보 활용으로 인한 공익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**소극적·수동적으로 대응**

< 과세자료 공유제한에 따른 폐해 >

- 국세 부과자료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되지 못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세(국세)는 부과되면서 취득세(지방세)는 부과되지 못하는 사례
- 국세와 지방세 환급자료가 공유되지 못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사례
- 골프회원권 등 명의개서자료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되지 못해 일부 취득세가 부과되지 못하는 사례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세정당국이 독점적으로 활용하던 과세정보를 복지부, 고용부 등 타 중앙부처(4대 보험료 부과)는 물론 지자체(지방세 부과)도 **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확대**
 - ① 과세정보 제공근거를 명확히 하고, 예산급부·지원 자격 심사시 필요서류를 기관간 공유
 - ② 일관성 있는 과세정보 제공업무 수행을 위한 **객관적 지침 마련**
- 세정당국은 외부기관의 과세정보 수요에 선제적·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을 방문하여 **과세정보 수요를 수집 및 발굴**

③ 향후 조치계획

- 국세기본법 개정('13.12월), 「과세정보 등 외부기관 제공 지침」을 보완 ('14년 상반기)
- 각 기관에 대해 과세정보 필요 여부를 조사하는 ‘찾아가는 수요 조사’ 지속 실시('13.8월)
- 공공부문내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을 구축 ('15년 상반기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국세청	통계기획담당관실	02-397-1881,1882

③ 국민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와 관행

- 3-1 어린이집 · 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
- 3-2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관행 개선
- 3-3 집회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
- 3-4 영 · 유아시설 주변지역 집회시위 제한
- 3-5 보금자리론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관행 개선
- 3-6 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관행 개선
- 3-7 공공입찰 참가 사업자의 설계비용 보상기준 개선
- 3-8 공정위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 개선
- 3-9 담합과징금 관련 불합리한 경감 관행 개선
- 3-10 청소년 대상 건보료 체납 독촉절차 개선
- 3-11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원 절차 개선
- 3-12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
- 3-13 보호외국인 장기구금 관행 개선

3-1 어린이집·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

① 선정사유

- (어린이집) 특별활동 등의 과다 실시로 어린이집의 보육료 외 수납 비용이 커지면서 부모의 보육부담이 증가
- (유치원) 방과후 과정에서 실시하는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의 과도한 운영으로 인해 정부지원 대비 학부모 부담 경감 효과 반감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<既 추진사항>

- 영유아보육법 개정('13.6.4, '13.8.13)을 통한 특별활동 관리방안 마련(복지부)
 - (관리강화) 특별활동 과목, 비용, 시간, 시행업체 등 관련 운영내역 공개
 - (운영개선)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활동비 수납액 결정, 부모 동의 및 일정 연령이상 특정 시간대 운영, 미참여자 대체프로그램 마련 등
- 방과후 과정 운영현황 관련 유치원 정보공시 확대 ('13.8월) (교육부)
 - 특성화 활동비용의 세부 산출내역 확인을 위한 활동비 세부항목 추가·확대

< 어린이집(복지부) >

- 보육료 외 수납하는 비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별활동 등 필요경비 관리·운영 모니터링 체계(재무회계시스템*) 구축
 - * 세입·세출 예산, 계정과목 등을 기본정보로 하여 수입·지출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
- 특별활동 대상연령, 운영시간, 연령별 실시과목 수 등 기준을 정하고, 이외 행사비 등 필요경비 항목별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

< 유치원(교육부) >

- 방과후 과정 운영현황 공시항목 구체화
- 특성화활동을 포함한 방과후 과정 운영일수, 운영방법, 교육내용, 교원배치, 프로그램 표준단가 등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
- 과도한 원비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

3] 향후 조치계획

< 어린이집(복지부) >

- 어린이집 재무회계관리시스템 구축('14.1월)
- 특별활동 표준운영모델 및 필요경비 수납액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('14.6월)

< 유치원(교육부) >

- 학부모부담 경감, 유아발달 특성을 고려한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 마련('13.12월)
- 유치원 정보공시 개정('14.2월)
-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해 유아교육법 개정('14년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보건복지부	보육정책과	02-2023-8915
		02-2023-8913
교육부	유아교육정책과	02-2100-6498

3-2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개선

① 선정사유

- 현행 민사집행법(제195조)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생필품, 의복, 가구 등은 압류할 수 없으나 연체대출 회수를 위한 채권추심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관행 존재
 - 특히, 일부 카드사가 월세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TV, 냉장고 등 유체동산을 과도하게 압류, 최저생계마저 위협하는 사례* 발생
- 카드사의 유체동산 압류현황 조사결과 ('12.10~13.2. 금감원)

구 분	총 건수	월세 거주자(%)	채권액 (억원)	회수액(억원)		
				경매낙찰	자진변제	합계
전업카드사(7개)	11,150	20.5	875	23	126	149
겸업은행사(5개)	323	0.6	32	0.3	0.3	0.6
전 체	11,473	20.0	907	23.3	126.3	149.6*

* 연간 추정시 약 359억원(경매낙찰 55억원, 자진변제 304억원)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소액채무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필품을 무리하게 압류하는 일이 없도록 유체동산 압류 제한기준을 강화 (금감원, 「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」 개편 시 既 반영, '13.7월)
 - ①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*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(TV,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) 압류를 제한
 - *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항에 의한 1개월간의 생계비(150만원)
 - ②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,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환자·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
 - * 금융권의 압류물품은 대부분 감정가액이 낮은 중고 가전제품으로 경매 낙찰액이 압류채권금액의 약 2.6%에 불과하여, 실질적인 채권회수보다는 변제압박용으로 활용

③ 향후 조치계획

-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제한 기준 철저 준수 (금감원 '13.7월 「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」 개선방안 既 발표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금융감독원	민원조사실	02-3145-5510,5512

3-3 집회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

1 선정사유

- 최근 층간소음 등 소음규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, 집회현장의 소음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비등*

* 여론조사 결과 ('11.10월, 미디어 리서치, 1천명)
집회시위 소음수준이 심각하다 (69.3%), 소음규제 강화에 찬성한다 (81.5%)

- 집회소음 민원은 매년 증가*하고 있고, 언론에서도 심각성을 지적**

* 집회소음 민원 : '09년 327건 → '12년 521건

** 관광객 쫓아내는 호텔앞 심야 확성기 집회(조선), 불법 소음집회에 귀막은 경찰(한경), 소음시위 시민피해 그냥 둘 수 없다(동아) 등

- 현행 규정 상 소음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높고, 5분간 2회 평균치를 측정해야 하므로 사법조치까지 과정이 길고 복잡해 실효성 미비*

- '11.6.4~9.7 서울 명동 상가대책위 집회시, 방송차량 이용 90dB 소음 유발하다가 소음측정하면 바로 낮춰 장기집회임에도 사법처리 못함
- '04년부터 '12년까지 총 35,753건 측정했지만, 사법조치는 43명(0.12%)에 불과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집회현장 주변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상지역, 소음기준 및 측정방식을 국민입장에서 조정

< 현행 집회소음 기준 >

- 집회소음 기준(집시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)

대상지역	주간(일출후~일몰전)	야간(일몰후~일출전)
주거지역·학교	65dB 이하	60dB 이하
기타지역	80dB 이하	70dB 이하

- 측정방법 및 지점(同 별표 2) :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1~3.5m 떨어진 지점 1.2~1.5m 높이에서 5분간씩 2회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

- ① 대상지역 : '종합병원·공공도서관'에 대해 주거지역·학교 기준 적용
- ② 소음기준 : 기타지역의 경우 주·야간 각 5dB씩 하향
(주간 80→75, 야간 70→65)
- ③ 측정방식 : 5분간씩 2회 측정수치 산술평균 → 5분간 1회 측정수치

3 향후 조치계획

-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('14년 중)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경찰청	정보4과	02-3150-2084,1466

3-4 영·유아시설 주변지역 집회시위 제한

① 선정사유

- 집회시위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초중고교 주변 지역에서 집회시위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, 해당 시설 관리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음

<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>

-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시설

①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, ② 초중등학교 주변 지역, ③ 군사시설 주변 지역

- 그러나, 초·중·고교 외에도 영·유아 보육·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유치원·어린이집에서의 학습권 보호가 취약한 실정

* '11년 기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48,000개로 초·중·고교(11,300개)보다 3배 이상 많음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도 초중고와 동일한 규제 적용
 -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시설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집회시위 신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

③ 향후 조치계획

-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('14년 중)

부처 경찰청	담당부서(과) 정보4과	사무실 02-3150-2084,1466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3-5 보금자리론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관행 개선

1 선정사유

- 보금자리론(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) 대출시 순대출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
 - * 채권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규정인 유동화자산 관리규정에 의해 일부 주택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
-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필요성은 있지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차주들에게는 보험가입비용*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차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으로 작용하는 문제
 - * 주택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차주 1인당 연간 12만원 내외
 - * 연도별 보금자리론 화재보험료 추정(백만원) : ('10년)11 ('11년)23 ('12년)37 ('13년)35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차주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생략 추진
 - 일부 보금자리론 대출시 차주에게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여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

3 향후 조치계획

- 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 관리규정 개정·시행(13.12월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금융위원회	금융정책과	02-2156-9710,9714

3-6 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관행 개선

① 선정사유

-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를 통한 대금회수 과정에서, 과도한 채권보전조치로 인해 채무자의 경제적·심리적 부담 발생 우려
 - 현행 채권보전조치 관련규정이 임의규정*으로 되어 있어, 과도한 채권보전조치로 인한 채무자 피해증가 우려
- *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 업무처리기준 제12조 : 예상구상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보전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대지급금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지급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
 - ① 가압류 금지를 의무사항으로 변경
 - 일정요건*에 해당하는 경우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압류 금지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토록 개선
- * 선순위금액을 고려해서 채권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가압류 등
- ② 실제가격을 기반으로 재산가치 평가
 - 현재 공시가격 등을 기본으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, 앞으로는 실거래 등 실제가격과 경락률 등을 고려하여 소유 재산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토록 개선

③ 향후 조치계획

- 신용보증기금 규정(채무조정요령) 개정 ('13.12월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금융위원회	산업금융과	02-2156-9750,9752

3-7 공공입찰 참가 사업자의 설계비용 보상기준 개선

1 선정사유

- 입찰비용(설계도서 작성) 부담 완화를 위해 설계·시공 일괄입찰(턴키) 및 대안입찰에서는 설계 보상비를 지급하나,
 - * 턴키 : 최우수 설계안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·공사까지 수행
 - * 대안입찰 : 원안 설계에 대한 우수대안 제안자를 낙찰자로 선정·공사까지 수행
- 입찰시 설계서 작성을 수반하는 기술제안입찰방식*은 설계 보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
 - *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방안, 생애주기 비용 개선, 공기단축 방안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

< 설계비 보상 관련 입찰제도 비교 >

	기술제안입찰	설계·시공일괄입찰(턴키)
설계 작성 비용(추정)	총 공사비의 1% 내외	총 공사비의 3% 내외
설계비 보상	-	총 공사비의 2% 범위 내에서 상위 입찰자 5인에게 차등 분배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기술제안 입찰에서도 턴키입찰·대안입찰과 마찬가지로 설계비 보상 제도를 도입
 -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입찰참가자가 제안 설계를 수행하므로 턴키 및 대안입찰과 같은 보상 필요
 - 다만,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주로 비설계 분야(공법 변경, 공정관리 방안 등)를 제안하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

3 향후 조치계획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」 개정 (‘14.12월)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기획재정부	계약제도과	044-215-5210,5211

3-8 공정위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 개선

1 선정사유

- 경제민주화 영향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및 권리구제 기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**능장처리·부실조사**라는 사회적 비판 제기 및 신고인들의 불만 지속

* 능장 및 부실처리 사례

- (09.9월) ○○기업, □□기업을 공정위에 1차 신고 → (10.9월) 공정위, 무혐의 결정
→ (10.12월) ○○중소기업, 2차 신고 → (11.10월) 공정위, 무혐의 결정
→ (12년) ○○중소기업, 3차 신고 → (13.7월) 공정위, 시정명령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시급하고 중요한 신고사건은 우선처리 하도록 기준 마련
- 신고사건의 조사·처리과정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 - 신고·제보·이첩 등 일체의 조사정보를 인지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전산시스템 개발·적용
 - 사건처리 단계별로 담당자상급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(중간보고, 장기사건 관리 등)을 수칙형태로 마련하고 이행여부 점검
 - 신고사건을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부터 진행기간이 산출되어 장기 사건이 식별되고 경고등이 켜지도록 관리
- 무혐의 등 심사관 전결 처리사건에 대해 심사관 요청시 외부전문가 위원회가 적정성 판단 후 재심사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 마련

3 향후 조치계획

- 사건인지·관리 사무규정 및 사건처리수칙 제정(11월중)
- 전산시스템 구축('14년 상반기)
- 시민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(11월중) 및 시민심사위원회 설치(12월중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공정위	감사담당관실	044-200-4099,4098

3-9 담합과징금 관련 불합리한 경감 관행 개선

① 선정사유

- 기업들의 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과정에서 상당폭 삭감 등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
- 과징금 경감 요소가 많으면 기업들이 사전에 범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적발 이후 감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우려

* 3년간(10~12년) 부과실적을 분석한 결과, 과징금 부과건의 90.5%(76/86)가 감액되었고 기초금액 대비 감액율이 60% 수준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결정과정의 재량 범위를 대폭 축소
 - ① 반복적 범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요건을 완화하여 과징금 부과를 강화
 - * (현행) 과거 3년간 '3회이상' 조치 & 벌점 누계 5점 이상
→ (개선) 과건 3년간 '2회이상' 조치 & 벌점 누계 3점 이상
 - ② 감경 필요성과 적용 빈도가 낮은 감경요소를 폐지하고, 감경사유별 감경률을 축소
 - * 감경률 상한 축소(단순가담 : 30 → 20%, 조사협력 : 15% → 10%)
 - ③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
 - ④ '시장·경제 여건'은 별도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현실적 부담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참작사유로만 활용

③ 향후 조치계획

- 과징금 고시 개정('13.12월)

부 처 공정위	담당부서(과) 심판총괄담당관실	사무실 044-200-4122,4121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3-10 청소년 대상 건보료 체납 독촉절차 개선

① 선정사유

- 법률 개정*('08.9.29)에 따라 '08.10월부터 미성년자는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가 없어 졌으나 '08.9월 이전 보험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(별도세대)에게도 행정적인 시효중단 방지를 위해 분기마다 계속 독촉 고지중

*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(보험료 납부 의무) 제2항

- 독촉고지로 인하여 미성년자에게 심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민원 및 언론비판 제기 ※ 미성년자 개별독촉 대상 : 28,033세대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별도세대 구성 미성년자의 '08. 9월 이전 체납보험료는 미성년기간(만 19세 미만) 동안 개별독촉 제외

③ 향후 조치계획

- '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독촉제외처리지침' 마련 ('13.11월)
- 지침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('14.1월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보건복지부	보험정책과	02-2023-7410,7394
보건복지부	보험급여과	02-2023-7420,7412

3-11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원 절차 개선

① 선정사유

- 장애인의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는 구매시 보험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고, 이를 어길 경우 보험대상이라 하더라도 절차 미준수로 보험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불만 제기

* 전동보장구 구입 전 사전 확인제, 지원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('08.2.15)

①장애인 등록(수급자) → ②보장구 처방(의사) → ③보장구 급여신청(수급자) → ④사전 확인(건보공단) → ⑤구입 및 급여 청구(수급자) → ⑥사전 신청여부 확인 및 급여지급(건보공단)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장애인 전동보장구 구매 관련 현행 사전 승인제도를 유지하되,
 -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보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보장구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구제(소급적용 기간 설정 등)
 - 객관적으로 구입일자를 확인(증빙)할 수 있는 방안 마련

③ 향후 조치계획

- 건강보험 장애인지원 관련 고시 또는 업무지침 개정('14년 상반기)

부처 보건복지부	담당부서(과) 보험급여과	사무실 02-2023-7420,7412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3-12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

1 선정사유

-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/2씩 고용보험료(실업급여)를 부담하고 있으나 과오납금은 사업주에게만 반환하도록 규정
- 근로자가 기여한 보험료의 경우 사용자에게 과오납금이 반환되어,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

2 정상화 추진방안

- 국민연금보험료를 과오납금으로 반환시 일정한 경우에 실제 보험료를 부담한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 (복지부)
-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반환 시 사업주 행방불명 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보험료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 (고용부)
 - * 다만, 보험료 '월별 부과·고지사업장'은 '12.8월부터 근로자별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근로자별 반환이 가능하나,
 - 보험료 '자진신고·납부사업장'(건설업 및 별목업)은 근로자별로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공사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일괄 산정하므로 시행 불가

3 향후 조치계획

-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(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) 제2항 개정('14.2분기)
 - * 사업장의 폐업이나 사용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기여금을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
-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'14년)

부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보건복지부	연금급여팀	2023-8340,8305
고용노동부	고용보험기획과	02-2110-7203,7231

3-13 보호외국인 장기구금 관행 개선

① 선정사유

- 보호외국인이 난민불인정 또는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의 1심 또는 2심에서 승소하여도 **확정판결 전까지는 계속 외국인보호소 등에 구금(출입국관리법상 '보호')하여 인권침해 논란 초래**
 - * 현행 「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」(법무부 훈령)에 따르면 보호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또는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호를 계속하도록 규정

② 정상화 추진방안

- 보호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또는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1심 또는 2심에서 승소한 경우
 - 최종 확정판결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하도록 개선

【 사례 : “파키스탄 난민, 위명여권 입국 이유로 2년째 구금 중” (경향, '13.6.21) 】

- 파키스탄 출신 A씨는 '11.5. 위명여권 행사 사실로 보호조치된 후 난민신청하여 '11.7월 불인정 되었으나, '12.11월 난민불인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복하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며,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계속 보호할 가능성이 높음

③ 향후 조치계획

- 「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」 개정(13.12월)

부 처	담당부서(과)	사무실
법무부	이민조사과	02-2110-4075,4079

참 고

— 부문별 정상화 과제 현황 —

부문별 정상화 과제 현황

부 문	과 제 명
① 공공·행정 (14)	(핵 4-1) 공공기관 직원가족 특별채용 근절 (핵 4-2) 지방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근절 (핵 4-3)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 (핵 4-4) 교육부 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개선 (핵 1-5)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 (핵 2-1)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(핵 2-2) 지자체 출연기관의 부실경영 예방 (핵 2-3) 연말 밀어내기 예산집행 관행 개선 (단 1-6) 공공기관의 학자금 무상·초과지원 관행 개선 (단 1-7) 비리 공무원 당연퇴직제도 개선 (단 1-8)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(단 1-9) 검사 비위로 인한 불법수익 박탈 (단 3-8) 공정위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 개선 (단 3-9) 담합과징금 관련 불합리한 경감 관행 개선
② 법치·질서 (10)	(핵 5-3) 미납추징금 환수 (핵 6-1)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(핵 8-5)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 (핵 9-4) 기부금·성금 관리의 불투명성 개선 (핵 9-5) 직능단체 훈·포장 대가수령 관행 개선 (단 1-4)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등 관행 개선 (단 2-1) 휴대전화 위치정보조회 제한 완화 (단 3-3) 집회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 (단 3-4) 영·유아시설 주변지역 집회시위 제한 (단 3-13) 보호외국인 장기구금 관행 개선
③ 외교·국방 (5)	(핵 3-4) 방위사업 분야 비리 근절 (단 1-5) 재외공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요구 관행 개선 (단 2-2)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기준 조정 (단 2-3) 예술·체육요원 병역편입기준 개선 (단 2-4) 장애인의 징병신체검사 면제 기준 조정

부 문	과 세 명
<p>④ 경제·산업 (12)</p>	<p>(핵 3-1) 원전비리 근절 (핵 6-5) 술 유통·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(핵 8-1) 장례식장·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(핵 8-3)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 (핵 9-1) 본사-대리점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(핵 9-2) 온라인 포털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(핵 9-3)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행태 시정 (단 1-1) 공공SW사업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(단 1-2)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 철폐 (단 2-5)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(단 2-7) KS와 기술기준 간 중복인증 일원화 (단 3-7) 공공입찰 참가 사업자의 설계비용 보상기준 개선</p>
<p>⑤ 조세·금융 (12)</p>	<p>(핵 5-1) 세금 고액·장기 체납 근절 (핵 5-4) 고소득 전문직·자영업자 탈루 근절 (핵 7-1) 보험 사기·범죄 근절 (핵 7-2) 보이스피싱, 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(핵 7-3)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방지 (핵 7-4)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·범죄 방지 (핵 8-4) 은행 꺾기 관행 개선 (단 2-7) 법인세 신고 및 비축물자 인수서류의 전자신고 허용 (단 2-8) 과세정보 공유 제한 제도 개선 (단 3-2)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관행 개선 (단 3-5) 보금자리론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관행 개선 (단 3-6) 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관행 개선</p>
<p>⑥ 농림·국토 (7)</p>	<p>(핵 1-6)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(핵 1-7)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근절 (핵 3-2) KTX 등 철도산업 비리 근절 (핵 3-3) 공항 건설 및 운영 비리 근절 (핵 6-2) 아파트 관리비 등 부동산 관행 개선 (핵 7-5)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(단 1-3) 공공택지개발시설 인수 지연 관행 개선</p>

부 문	과 세 명
<p>㉓ 복지·고용 (11)</p>	<p>(핵 5-2) 4대 보험료 고액·장기 체납 근절 (핵 5-5)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 개선 (핵 1-1)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(핵 1-2)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(핵 1-3) 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(핵 1-4) 진료비 거짓·부당청구 관행 개선 (핵 2-4)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(핵 6-6)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근절 (단 3-10) 청소년 대상 건보료 체납 독촉절차 개선 (단 3-11)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원 절차 개선 (단 3-12)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</p>
<p>㉔ 교육·문화 (9)</p>	<p>(핵 3-5)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(핵 6-3) 경주류 사행산업 규정 미준수 행위 근절 (핵 6-4)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근절 (핵 8-2)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(핵 9-6) 연예기획 분야 잘못된 관행 개선 (핵 9-7) 체육단체의 불공정, 불투명성 개선 (단 3-1) 어린이집·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 (단 1-10)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(단 1-11)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관행 개선</p>

